

월간
재정포럼

2022. February_Vol.308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2

권두칼럼

복지정책의 뉴노멀(New Normal) | 최병호

현안분석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 민경률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 최성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한 주 세금 감면 총당 금지 외

CONTENTS

권두칼럼

복지정책의 뉴노멀(New Normal) | 최병호 02

현안분석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 민경률 08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 최성은 2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한 주 세금 감면 총당 금지 외 48



복지정책의 뉴노멀(New Normal)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대선이 가까이 다가왔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아내는 숙고에 들어갈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게 되겠지만 국정을 맡아 운영할 때에는 신중해지기를 기대한다. 복지공약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재정 부담이 따르는 선진 복지국가의 포용적 성장

영국은 복지의 전범(典範)으로 일컬어지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궁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를 5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불리는 복지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에 서구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복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도시화와 더불어 출산 붐이 일면서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갖게 된 데에 있다. 이로써 노인 부양의 선순환이 가능한 인구구조가 형성되었고, 국가 간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더욱 견인하였다.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되면서 은퇴 노인에게 두둑한 연금을 보장하였고, 실직자에게는 관대한 실업급여를, 질병 발생 시에는 치료는 물론이고 상병수당까지 지급하였다. 경제적 낙오자인 빈곤층에는 성장의 과실을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 외국 이민자는 자국민이 기피하는 노동력의 결핍을 메꾸어 주는 고마운 존재였고 이민자의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호의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후발국가인 한국은 경제적 성공이 우선이었고 유럽식 복지국가는

늘 전망의 대상이었다. 이제 한국은 경제규모 10위의 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도 복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선부른 복지 확충은 국민부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근래에 선진 복지국가들은 경제침체와 실업, 양극화의 심화,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양산에 대처하는 데에 기존의 복지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문제는 포용적 성장이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선택이지만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이다. 유럽 제국의 국민부담률은 이미 40%를 넘어섰고, 국가부채 비율은 거의 100%로 향하고 있다. 대안으로 부자과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포용성장의 핵심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으로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늘려 인적자본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장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하자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용성장 전략의 성공 여부는 근거(evidence)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칫하면 과도한 재정만 투입하고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복지정책의 뉴노멀을 부르는 변화의 물결

유럽 국가들의 포용적 성장 전략은 불확실하고 재정적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는 뉴노멀에 주목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한 뉴노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뉴노멀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복지제도는 지속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정책의 뉴노멀이 필요하게 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변화하면서 청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뉴노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현실화되며, 복지정책 역시 전통적인 제도를 넘어 뉴노멀이 필요하게 됐다.

.....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은 모든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대체되는 등 뉴노멀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이다.**

는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노인 의료와 돌봄의 보장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둘째, 세계 시장의 글로벌화는 국가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내에서 계층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 셋째, 양성평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던 노인과 아이의 돌봄은 사회적 부담으로 편입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되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지역복지는 쇠퇴하고 국가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복지의 국가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의 정치화는 그 상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제국의 국가부채는 점증하고 있다. 근래에 커뮤니티 케어와 재택복지를 강조하는 것도 복지의 국가재정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대면, 로봇, 전기차,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은 시장과 일상생활의 지형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장기고용에 의존하던 직장이 퇴조하게 되면 사회보험제도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전통적인 ‘20대 80의 사회’가 미래에 ‘1대 99의 사회’로 전환하게 되면 기본소득이라는 안전장치가 도입될지도 모른다. 뉴노멀 시대에 전통적인 복지제도는 그 기반과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뉴노멀 시대의 현명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

이제는 뉴노멀의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이다. 생각건대,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개인별 적립식 연금으로 전환하고, 기본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은 인공지능 방식의 자가진단과 재택의료로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위중증 질환의 국가 필수보장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의 실직과 질병, 장애에 의한 소득상실은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은 모든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 재원은 소득, 소비, 재산(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세금과 기부에 의해 조달되고,

개인의 사회적 기여(세금과 기부)에 비례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낙오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복지는 후퇴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복지가 지향하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의 근원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 • • •
**뉴노멀 시대의
 복지정책은 복지의
 지향가치인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의 근원을 모색하는
 현명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민경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krmin@kipf.re.kr)

I. 서론

공공기관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나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등 다양한 사회형평적 채용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이전 지역인재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이전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 이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의무비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지역인재로 해당 공공기관에 입사한 자들이 공공기관에 잘 적응하고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전 지역인재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정책 확대에 앞서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공공기관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시행이 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공공기관 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전 지역인재 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1년 이내 퇴사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규 입사자가 이직하는 경우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비용과 교육훈련 비용 등이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서 조직 차원에서는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청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에서의 이직 요인을 살펴본 황광훈(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가장 많은 이직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신규 입사자의 1년 이내 이직률을 결과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지역인재로 입사한 신규 입사자와 그렇지 않은 신규 입사자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점검하였다. 제Ⅲ장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의 특성(지역인재 여부, 성별, 연령 등)이 1년 이내 퇴사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개인 특성과 1년 내 퇴사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의
1년 이내 퇴사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논의

1.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제도이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은 근거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원희·하태욱, 20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이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실시되었던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2018년 1월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실시되었던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제29조의2)가 2018년 1월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1월에 「지방대육성법」을 제정하여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수립하였고, 2017년부터는 동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은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채용 목표제 대상과 지역인재의 정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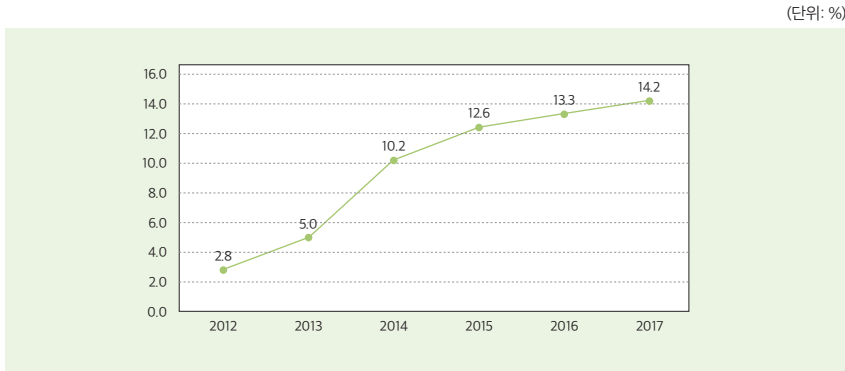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인재 채용은 우대방식에 따라 채용 목표제, 채용 할당제, 채용 가점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조경호·김형성, 2017). 먼저 채용 목표제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야 할 지역인재의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에 맞춰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자 중 일부를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목표제의 경우 이미 다양한 채용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소한

<표 1> 지역균형인재와 이전 지역인재 비교

구분	근거 법률	채용 목표제 대상	지역인재의 정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모든 공공기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이전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 ¹⁾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주: 1)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126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대상임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자료-혁신도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Q&A」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9.)

이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보면, 2012년 2.8%에 불과하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하여 2017년 14.2%까지 증가하였다.

의 실적주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채용인원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채용 할당제는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습득한 점수와는 별도로 정해진 목표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정해진 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 지역 지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인재의 경쟁력 약화와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채용 가점제는 지역인재 전원에게 채용 과정 전체 혹은 일부 과정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인재 모두에게 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출신 지원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153개 이전 공공기관 중 소속기관 44개를 제외한 109개 공공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에 2.8%에 불과하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14.2%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를 넘는 데 반해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와 강원도처럼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충청북도처럼 채용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였다.

비율이 도리어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울산광역시나 전라북도처럼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연간 신규채용인원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채용비율이 높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매우 저조하였다.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연도별 목표 채용비율을 설정해 주었다.

다만,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 지역인재 채용에서 제외되는 6개의 예외항목을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

<표 2>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8%	21%	24%	27%	3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이전 지역인재 채용 예외 조항

근거	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 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 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출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퍼센트 의무화」, 2017. 9. 19.

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18년과 2019년, 109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각각 23.4%, 25.9%로 해당 연도의 의무채용 비율 목표인 18%와 21%를 초과 달성하였다.²⁾ 2020년에는 의무 대상 기관을 이전 기관으로만 한정하였던 사항을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특정 대학의 학생이 편중되는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충청남도 소재 공공기관만이 의무채용을 적용받았지만, 2020년 5월 27일부터 충청권 4개(대전, 세종, 충남, 충북) 시·도로 광역화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혁신도시도 2022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이 시행되었다.

2.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지역별 이전 지역인재 의무 대상 기관은 전체 348개 공공기관 중 222개 기관을 제외한 126개이다. 제외된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17개 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그다음으로 경기도(29개 기관), 대전광역시(18개 기관), 부산광역시(9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특별시로 21개 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16개 기관), 전라남도(13개 기관) 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구분해서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여부를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유형별 50%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지역별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지역은 의무 대상 기관이 없어 0%로 나타난 반면, 경상북도(20.8%)와 충청남도(15.5%)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준(2.2%)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음에도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또한,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한 결과, 109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8년 23.4%, 2019년 25.9%로 해당 연도의 의무채용 비율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혁신도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2020. 2. 19.

공공기관 유형별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여부를 살펴보면,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유형별 50%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표 4>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의무 기관

(단위: 개)

구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여부		총계
	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117	0	117
부산광역시	9	12	21
대구광역시	6	9	15
인천광역시	7	0	7
광주광역시	4	0	4
대전광역시	18	16	34
울산광역시	3	7	10
세종특별자치시	4	21	25
경기도	29	0	29
강원도	3	8	11
충청북도	2	11	13
충청남도	4	3	7
전라북도	4	6	10
전라남도	3	13	16
경상북도	3	7	10
경상남도	4	10	14
제주특별자치도	2	3	5
합계	222	126	348 ¹⁾

주: 1)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이 통합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2021. 9. 10.)함에 따라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9.)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98호)」(2018. 1. 2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기관 유형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기관

(단위: 개, %)

구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여부		합계
		제외	대상	
공기업(시장형)	기관 수	6	9	15
	비율	40.0%	60.0%	100.0%
공기업(준시장형)	기관 수	8	12	20
	비율	40.0%	60.0%	100.0%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기관 수	4	9	13
	비율	30.8%	69.2%	100.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관 수	41	41	82
	비율	50.0%	50.0%	100.0%
기타공공기관	기관 수	163	55	218
	비율	74.8%	25.2%	100.0%
합계	기관 수	222	126	348
	비율	63.8%	36.2%	100.0%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6>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2016~2020년)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특별시	117	0.0	0.0	0.0	0.0	0.0
부산광역시	21	7.7	13.8	6.8	9.9	10.3
대구광역시	15	9.1	11.3	10.5	13.2	8.8
인천광역시	7	0.0	0.0	0.0	0.0	0.0
광주광역시	4	0.0	0.0	0.0	0.0	0.0
대전광역시	34	0.4	0.5	0.2	0.2	8.0
울산광역시	10	6.3	4.4	6.8	9.7	7.0
세종특별자치시	25	2.1	1.2	0.7	0.2	2.2
경기도	29	0.0	0.0	0.0	0.0	0.0
강원도	11	8.8	9.3	7.8	7.7	6.9
충청북도	13	3.1	4.0	4.1	9.4	9.0
충청남도	7	10.9	10.9	6.7	10.5	15.5
전라북도	10	9.7	10.3	10.9	11.1	11.2
전라남도	16	10.0	15.3	15.0	9.2	9.9
경상북도	10	18.4	17.9	19.4	20.8	20.8
경상남도	14	3.8	7.3	8.5	11.4	10.7
제주특별자치도	5	3.4	1.9	3.0	2.0	2.2
총계	348	5.6	6.8	6.0	5.2	7.3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구직을 채용하거나 분야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채용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과 광주광역시에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지역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비율은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전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 않지만, 비수도권 인재를 높은 비율로 채용함으로

<표 7>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비율(2016~2020년)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특별시	117	28.2	29.5	31.0	34.7	28.9
인천광역시	21	74.1	69.5	81.6	80.7	75.8
경기도	15	67.7	68.8	78.0	67.6	83.9
광주광역시	4	89.2	94.7	91.2	95.8	95.5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세종특별자치시는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2%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이전 지역인재 채용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 8>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단위: 개, 명, %)

이전 지역	기관 수	2018년도						2019년도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체 채용 인원	지역 채용 인원	비율 (%)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				대상 인원	채용 인원	비율 (%)
합계	109	14,338	2,011	14.0	6,076	1,423	23.4	13,536	2,086	15.4	5,886	1,527	25.9
부산	11	666	211	31.7	511	164	32.1	575	187	32.4	431	154	35.7
대구	9	655	171	26.1	512	142	27.7	687	169	24.5	426	122	28.7
광주·전남	13	3,181	485	15.2	1,698	359	21.1	3,166	549	17.3	1,611	396	24.6
울산	7	2,055	143	6.9	492	117	23.8	1,126	115	10.2	371	101	27.2
강원	11	2,892	295	10.2	497	145	29.1	3,208	295	9.2	650	166	25.5
충북	10	296	44	14.7	151	32	21.2	448	89	19.8	212	58	27.4
전북	6	1,208	164	13.6	610	119	19.5	1,024	154	15.1	400	102	25.5
경북	8	1,019	207	20.3	613	144	23.5	1,052	232	22.1	711	184	25.8
경남	10	1,437	221	15.3	816	165	20.2	1,487	226	15.2	822	185	22.5
제주	3	93	12	13.0	31	6	19.4	64	6	9.4	23	5	21.7
충남	2	308	43	14.0	146	32	21.9	358	65	18.0	230	55	23.9
세종	19	531	17	3.2	0	0	-	342	1	0.3	0	0	-

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은 전체 채용인원에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98호)」에 따라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 경력직 채용,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채용인 경우의 채용 인원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18-19 지역인재 채용현황」,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34>, 검색일자: 2021. 12. 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9> 지역별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2020년)

(단위: 개, 명, %)

지역	기관 수	전체			예외항목을 제외한 채용			A-B(%)
		채용인원	지역인재	비율(A, %)	채용인원	지역인재	비율(B, %)	
부산광역시	12	562.0	148.5	26.4	359	114	31.9	-5.50
대구광역시	9	482.0	152.0	31.5	358	124	34.5	-3.00
대전광역시	16	3,526.5	387.0	11.0	934	317	33.9	-22.90
울산광역시	7	830.0	60.0	7.2	120	35	29.2	-22.00
세종특별자치시	21	339.5	11.0	3.2	23	8	34.8	-31.60
강원도	8	2,621.8	206.3	7.9	322	84	26.1	-18.20
충청북도	11	27.0	9.0	33.3	62	25	40.1	-6.80
충청남도	3	359.8	67.8	18.8	164	54	32.9	-14.10
전라북도	6	698.5	119.0	17.0	346	98	28.3	-11.30
전라남도	13	2,496.0	447.5	17.9	1,280	346	27.0	-9.10
경상북도	7	950.0	204.0	21.5	616	170	27.6	-6.10
경상남도	10	1,192.0	182.0	15.3	518	126	24.3	-9.00
제주특별자치도	3	65.0	9.0	13.8	28	9	32.1	-18.30
합계	126	14,016.1	1,987.1	14.2	4,121	1,179	28.6	-14.40

주: 2020년 6월에 신규 지정된 21개 기관 포함(부산 1, 충북 1, 충남 1, 세종 2, 대전 16)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대전광역시, 「18-19 지역인재 채용현황」,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34>, 검색일자: 2021. 12. 9.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써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연도별(2018~2020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비율과 예외항목을 제외한 채용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예외항목을 제외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가 31.6%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3.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관련 선행연구

지역인재 채용이 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기존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해 취업이나 입학 등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조경호·김형성, 2017).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지방인재 채용 기관의 채용 결정요인을 분석한 류장수 외(2013)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 5개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는 수도권 인재의 집중도가 50% 이상이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수도권 출신자가 많은 공공기관일수록 수도권 출신자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지방이전이 시작되기 전인 당시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거나 평균 보수액이 높은 기관일수록 지방인재 채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원희·하태욱(2016)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을 때,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 학교의 졸업생 수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혁신도시 거버넌스 구축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즉, 이전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본래 목적대로 산업 수요와 필요 역량에 관한 커리큘럼 등이 유기적으로 형성

이원희·하태욱(2016)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 수 확대보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협력하여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주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고는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이전 지역인재 여부가
1년 내 퇴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건섭(2020)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 운영의 투명성에 관하여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조사를 통해 지역인재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인재할당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 공정한 관리, 역차별 가능성 해소, 지방대학 졸업 인원에 비례한 이상적인 채용비율 추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한정적인 대학생 대상의 조사로 지역인력이 옹호할 만한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도 채용비리 척결,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제 등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이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한 임태경·박재희(2020)는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혁신도시 거버넌스의 유의미성을 찾아내었고 지역의 인적자원 수(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졸업한 인적자원의 규모)와 국립대학교 비율은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주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이 공공기관 또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 지역인재 채용정책이 이전 지역인재의 1년 내 퇴사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은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는 낮아지는 연구결과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김진희, 2019). 따라서 신규 입사자의 이직률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직률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전 지역인재의 1년 내 퇴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신규 입사자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의 이직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이전 지역인재의 이직률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이전 지역인재 여부가 1년 내 퇴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III.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정책의 효과 분석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받고 있는 38개 공공기관의 2018년과 2019년 신규 입사자 4,42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TATA 13.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년 이내 퇴사자의 이전 지역인재 여부와 개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1년 내 퇴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신규 입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여성(2,386명, 53.9%)의 비율이 남성(2,039명, 46.1%)보다 약간 더 높다. 둘째, 연령은 21세 이상~30세 이하가 2,335명(52.8%)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31세 이상~40세 이하가 1,79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된 신규 입사자의 특성을 보면, 연령은 21세 이상~30세 이하가 52.8%로 절반 이상이며, 혼인 여부는 미혼이,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단위: 명)

구분		이전 지역인재 (1,185명)	해당 없음 (3,240명)	총계 (4,425명)
성별	여자	530	1,856	2,386
	남자	655	1,384	2,039
연령	21세 이상~30세 이하	650	1,685	2,335
	31세 이상~40세 이하	486	1,311	1,797
	41세 이상~50세 이하	39	178	217
	51세 이상	10	66	76
혼인 여부	미혼	1,071	2,947	4,018
	결혼	114	293	40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3	306	389
	전문대학 졸업	24	227	251
	대학교 졸업	1,026	2,488	3,514
	대학원(석사) 졸업	47	137	184
	대학원(박사) 졸업	5	82	87
장애 여부	장애 없음	1,128	3,175	4,303
	장애 있음	57	65	122
1년 내 퇴사 여부	근무	1,099	2,672	3,771
	퇴사	86	568	654

출처: 민경률·손호성(2021),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신규 입사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근무와 1년 내 퇴사비율을 보면, 지역인재의 근무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퇴사비율이 낮아지고, 혼인 여부와 장애 여부, 입사연도에 따른 퇴사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셋째, 혼인 여부는 미혼인 자가 4,018명으로 전체 입사자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51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애가 있는 자는 전체의 2.8%로 매우 낮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1년 내 퇴사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4.8%인 654명이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입사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근무와 1년 내 퇴사비율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인재 여부에 따라서는 지역인재인 경우의 근무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퇴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51세 이상의 퇴사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퇴사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와 장애 여부, 입사연도에 따른 퇴사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1> 분석 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근무와 1년 내 퇴사비율

(단위: 명, %)

구분	구분	근무(비율)	퇴사(비율)
지역인재 여부	해당 없음	2,672(82.5%)	568(17.5%)
	지역인재	1,099(92.7%)	86(7.3%)
성별	여성	2,181(91.4%)	205(8.6%)
	남성	1,590(78.0%)	449(22.0%)
연령	21세 이상~30세 이하	1,999(85.6%)	336(14.4%)
	31세 이상~40세 이하	1,520(84.6%)	277(15.4%)
	41세 이상~50세 이하	190(87.6%)	27(12.4%)
	51세 이상	62(81.6%)	14(18.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8(76.6%)	91(23.4%)
	전문대학 졸업	202(80.5%)	49(19.5%)
	대학교 졸업	3,014(85.8%)	500(14.2%)
	대학원(석사) 졸업	172(93.5%)	12(6.5%)
혼인 여부	대학원(박사) 졸업	85(97.7%)	2(2.3%)
	미혼	3,415(85.0%)	603(15.0%)
장애 여부	결혼	356(87.5%)	51(12.5%)
	장애 없음	3,667(85.2%)	636(14.8%)
입사연도	장애 있음	104(85.2%)	18(14.8%)
	2018년	1,656(86.4%)	261(13.6%)
총계	2019년	2,115(84.3%)	393(15.7%)
	총계	3,771(85.2%)	654(14.8%)

출처: 민경률·손호성(2021),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인재 여부가 1년 내 퇴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 후 1년 내 퇴사비율은 취업자의 조기 퇴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취업자의 자발적인 이직 의사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무자의 퇴사 여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직 의사를 변수로 활용하지만, 본고에서는 신규 입사자의 1년 내 퇴사 여부를 활용하고자 한다. 1년 내 퇴사 여부는 퇴사한 경우와 근무한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더미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0과 1로 구분하는 경우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의 값을 가지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는 로짓회귀분석이 적절하다. 설명변수로는 지역인재 여부 이외에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 여부, 장애 여부가 활용되었다. 분석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 = \log_b \frac{p}{1-p}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k x_k \quad \text{식 (1)}$$

지역인재 여부가 1년 내 퇴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4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인재가 아닌 신규 입사자가 지역인재인 입사자보다 퇴사할 확률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로짓회귀분석 결과

구분	Coef.	Std. Err.	z	P> z	Odds Ratio
상수	-1.27	0.20	-6.24	0.00	0.28
성별	1.25	0.10	13.09	0.00	3.49
연령	-0.10	0.07	-1.40	0.16	0.90
최종학력	-0.30	0.06	-5.29	0.00	0.74
혼인 여부	-0.41	0.18	-2.34	0.02	0.66
장애 여부	-0.12	0.27	-0.45	0.65	0.88
입사연도	0.20	0.09	2.17	0.03	1.22
지역인재	-1.18	0.12	-9.44	0.00	0.31

Likelihood χ^2 (10)=318.18

Log likelihood=-1,694.4

Pseudo R2=0.09

주: 변수는 다음과 같이 코딩되었음

- 성별: 0=여성, 1=남성
- 연령: 1=21세 이상~30세 이하, 2=31세 이상~40세 이하, 3=41세 이하~50세 이하, 4=51세 이상
- 최종학력: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전문대학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석사) 졸업, 5=대학원(박사) 졸업
- 혼인 여부: 0=미혼, 1=결혼
- 장애 여부: 0=장애 없음, 1=장애 있음
- 지역인재: 0=해당 없음, 1=지역인재
- 입사연도: 0=2018년, 1=2019년

출처: 민경률·순호성(2021),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정책 수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에 앞서 우도비(Likelihood Ratio: LR)검정을 통해 본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는데, 검증값(Chi-square)이 318.18(with p-value=0.000)로 나타나 모델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성별, 교육수준, 혼인 여부, 지역인재 여부가 1년 내 퇴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4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6%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미혼인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보다 퇴사할 확률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9년 신규 입사자가 2018년 신규 입사자보다 퇴사할 확률이 2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지역인재가 아닌 신규 입사자가 지역인재인 입사자보다 퇴사할 확률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전 지역인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의무대상 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2020년부터 이전 지역인재 채용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채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정책 수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사항이 실제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사항을 제외한다면, 실제 채용된 지역인재 비율은 의무채용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이전 지역인재는 타 지역의 지원자에 비해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구성원이 퇴사자보다 직무능력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퇴사 확률이 낮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채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들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논의사항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전 지역인재 채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지역인재 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권과 경남권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광역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화는 이전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전 지역인재의 대상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 준비생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정 학교 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광역화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광역화에 앞서 이전 지역인재와 비수도권 인재를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과 비수도권 인재 채용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두 가지 방식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인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공급되면 이는 다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들은 양질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과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계약학과를 마련하여 대학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전력기술 외 10개 공공기관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2022년 2학기부터 감사분야의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생보다는 재직자의 재교육을 위한 방식으

**이전 지역인재 채용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 지역인재 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채용비율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오픈 캠퍼스와
같이 지역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전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사례는 연세대학교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계약학과로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어 삼성전자 입사와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이 특정 학과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인 오픈 캠퍼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오픈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신현구, 2019).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대학생에게는 교육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채용비율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전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퍼센트 의무화」, 2017. 9. 19.
- 김진희, 「기업의 이직률 결정요인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제18권, 2019, pp. 3~14.
- 류장수·박성익·조장식·김종한·곽소희, 「공공기관의 지방 인재 채용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관계연구』, 제23권 제3호, 2013, pp. 119~143.
- 민경률·손호성, 『공공기관 채용정책에 대한 연구: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20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건섭, 「공공기관 인재채용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지역인재할당제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2020, pp. 195~214.

신현구, 『혁신도시 조성 및 활성화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9.

이원희·하태욱, 「혁신도시 거버넌스 구성이 이전지역인재 채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16권, 2016, pp. 1~10.

임태경·박재희,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및 정책 함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2호, 2020, pp. 3~30.

조경호·김형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4호, 2017, pp. 237~260.

황광훈,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제43권 제20호, 2020, pp. 41~74.

국토교통부, 「정책자료-혁신도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Q&A」,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95, 검색일자: 2021. 12. 9.

대전광역시, 「'18-'19 지역인재 채용현황」,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6534>, 검색일자: 2021. 12. 9.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통계-II. 기관운영 > 신규채용 현황 > 신규 채용 현황 > 정규직(일반 정규직) > 이전지역 지역인재」, <https://alio.go.kr/statisticsSearch/singleStatisticsSearch.do>, 검색일자: 2021. 12.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hoi@kipf.re.kr)

I. 서론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9.5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2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보험료 6.55%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투입분은 약 3.3조원(전체 수입의 34%)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외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경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경에는 고령인구가 39.8%에 달하여 세계적인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치매유병률 등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노인돌봄 부문 수요와 재정지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I.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과 지출 현황

1. 노인돌봄 부문 재정사업 현황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사업은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주를 이루지만, 노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노쇠를 지연시키고 돌봄 대상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건강관리사업을 포괄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임종과정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재정사업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노인돌봄 및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으로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의료부문의 요양병원도 장기요양시설과의 기능 혼재로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사업은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주를 이루지만, 노인의 건강관리사업을 포괄할 수 있으며, 보다 광범위하게는 임종을 지원하는 재정사업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노인돌봄·의료서비스 부문 재정정책

구분	예방·관리	돌봄·요양			임종 지원	
주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인지저하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 이동지원 서비스 - 치매가족 휴가제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통합 재가급여 시범사업 - 가족요양 보호사지원			
정부 재정	- 방문건강관리 - 노인건강관리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자살예방 사업	- 치매관리 체계구축 - 노인 건강관리 (치매관리)		-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운영 - 노인요양 시설확충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양로시설 운영지원 - 지역사회통합 돌봄선도사업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국민 건강 보험	- 건강검진지원 - 건강백세 운동교실 - 노인건강 마일리지	중증산정 특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p. 27의 표 재인용 및 현재 사업 기준으로 재구성함

**노인돌봄 부문의
지출규모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2020년
총지출은 약 1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총지출이
약 9.7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노인돌봄과
의료부문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돌봄서비스들이 일부 존재한다. 한편, 노인건강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은 일차의료서비스와 상당 부문 역할이 중첩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 차원에서 수행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보건소 전달체계를 활용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주로 치매진단 등 치매 초기의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인지저하등급을 포함함에 따라 초기 치매 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지원사업,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등이 있다.

2.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출 현황

2020년 기준 노인돌봄 부문의 지출규모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약 9.5조원, 요양병원 급여비 약 4.7조원, 치매관리사업 1,889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억원 등 노인돌봄 부문 총지출은 약 1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노인돌봄 부문 총지출이 약 9.7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노인돌봄과 의료부문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인지지원등급까지 포괄하는 대상자의 확대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 수요 측면의 확대와 서비스 공급자의 인건비 상승 및 수가 인상 등 공급 측면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돌봄 및 요양서비스의 증가는 돌봄이 대체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견 예측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과 더불어 요양병원 급여비 지출도 동반하여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 또한 경증 노인들의 돌봄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들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통합을 통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사업 등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 김원식 외(2020)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수급자에게는 요양서비스 평균 가격을 낮추는 소득효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비수급자 노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로 요양병원 등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2>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의 재원별 사업 예산¹⁾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7,227	55,891	68,008	83,149	94,695
국민건강보험	요양병원 급여비	36,037	39,565	42,257	45,862	47,305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²⁾	1,534	+1,696	1,945	2,458	3,728
	방문건강관리사업 ³⁾	-	-	301	306	+380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⁴⁾	-	-	-	+95	178
	양로시설 운영 지원	323	+329	345	363	+403
	노인요양시설 확충	-	213	859	+1,177	+69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⁵⁾	-	4	4	11	+41
	연명의료제도화 지원 ⁷⁾	-	-	27	55	38
	소계	1,857	2,242	3,481	4,465	5,462
국민건강증진기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158	+2,186	1,457	2,364	+1,889
	노인건강관리사업	174	172	196	196	25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59	99	168	218	29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⁶⁾	33	37	52	75	88
	소계	424	2,494	1,873	2,853	2,520
응급의료기금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25	115	100	110	+136
합계		97,089	112,678	128,775	150,242	164,527

주: 1) 추경을 반영한 예산으로 집계하되,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상이할 경우 숫자 앞에 ‘+’ 표기

2) 2019년까지 6층 서비스로 분절(돌봄기본, 돌봄종합,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단기 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되어 운영되다 2020년부터 통합 운영

3) 2017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의 내역사업으로 운영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소와 협력하여 운영

4)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며, 2019년 6월부터 2년간 시행

5)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동네의원과 협력하여 운영

6) ‘국가암관리’ 내역사업으로 운영

7)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내역사업으로 운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17~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건강보험 주요통계』, 2021.;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노인돌봄 부문의
지출 증가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의한
바가 크다.
대상자의 증가 등
수요 측면의 확대와
서비스 공급자의 인건비
상승 및 수가 인상 등
공급 측면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노인돌봄 부문의 근간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

노인돌봄 부문의
간이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와
함께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계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비용/수익)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던 것이 2017년부터는 108.7%로 당기순적자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9년도의 총수지율은 109.1%로 적자재정이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총수지율이 98.5%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의 인상, 누적적립금 사용, 국고지원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9년 약 1.1조원에서 4,136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0년에는 10.25%로 증가하였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

<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익	보험료	4,770	11,996	18,316	21,423	23,697	25,421	27,047	28,833	30,916	32,772	39,245	49,526	63,568
	국고지원금	1,207	2,044	3,323	3,883	4,152	4,591	5,033	5,166	5,525	5,822	7,107	8,912	12,414
	의료급여부담금	2,661	6,601	6,704	6,773	7,018	7,439	8,025	8,849	9,761	12,081	14,347	16,853	19,463
	기타	51	209	434	552	750	861	1,381	1,036	1,095	755	833	913	692
	소계(A)	8,690	20,849	28,777	32,631	35,617	38,312	41,486	43,884	47,297	51,430	61,533	76,203	96,138
비용	보험급여비	4,314	17,467	24,153	26,027	27,328	30,995	35,984	40,362	44,204	52,317	64,652	79,469	90,858
	관리운영비	1,079	1,357	1,441	1,556	1,663	1,782	1,977	2,002	2,164	2,396	2,502	2,927	3,039
	기타	156	260	297	295	382	403	536	775	858	1,177	855	754	798
	소계(B)	5,549	19,085	25,891	27,878	29,373	33,180	38,497	43,140	47,227	55,891	68,008	83,149	94,695
총수지율(B/A) (%)	63.9	91.5	90.0	85.4	82.5	86.6	92.8	98.3	99.9	108.7	110.5	109.1	98.5	
누적준비금적립금	230	1,054	3,082	6,994	11,258	11,258	12,855	15,092	17,038	18,632	17,685	10,997	4,136	

주: 1. 각 연도 말 결산기준, 2012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였으나,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 적용보험료에 사용자부담금 포함
 2. 지역 세대주 수에 비가입세대주 포함
 3. 기타는 사업의 수입으로 예금이자, 기타징수금 수입 및 가산금 등이 포함됨
 4. 누적법정준비금: 2013년부터(K-IFRS적용)는 당기 법정준비금적립액을 이익잉여금 처분 해당일인 이사회의결일(차기 2월)에 법정준비금으로 반영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록 된 국고지원금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9년 8,912억원에서 2020년에는 약 1.24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2. 수입 측면의 지속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국고지원

2013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6.55%에서 2018년 7.38%로 인상되기 시작하여 2022년 12.27%로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에 연동되어 있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구조이므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 더불어 보험료 수입이 자연 증가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지출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율의 증가율보다 더 큰

**2013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6.55%에서
2018년 7.38%로
인상되기 시작하여
2022년 12.27%로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되었다.**

<표 4>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

연도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008	5.08	4.05
2009	5.08	4.78
2010	5.33	6.55
2011	5.64	6.55
2012	5.80	6.55
2013	5.89	6.55
2014	5.99	6.55
2015	6.07	6.55
2016	6.12	6.55
2017	6.12	6.55
2018	6.24	7.38
2019	6.46	8.51
2020	6.67	10.25
2021	6.86	11.52
2022	6.99	12.27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요양보험 급여지출 속도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상시킬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절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8%(직장가입자)를 상한으로 하여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법령에 상한이 정해진 건강보험료 인상절차와는 달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는 상한 범위도 주어지지 않았다. 전 연령층을 거쳐 사용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돌봄 및 요양 필요가 인정된 고령층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 연령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액이 확정된 이후 국고지원율은 대체로 20%를 하회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사후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중도 2019년 18%에서 2020년 약 20%로 법정비율까지 증가하였다. 법정 국고지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비용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다. 의료급여부담금은 2019년 약 1.69조원에서 2020년 약 1.9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및 관리운영비를 합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전체 장기요양보험수입의 약 34%(2019년)에 달하고 있다.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요양보험 급여지출 속도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와 돌봄 수요 증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보험료의 20% 수준의 국고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 비용 측면의 지속가능성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지출액은 2020년의 경우 약 5.2조원(전체 급여액의 55%), 시설급여 지출액은 약 3.6조원(전체 급여액의 39%)이다. 재가급여지출 중 대부분은 방문요양인데,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이 방문요양서비스이다. 재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45%, 복지용구 34%, 방문목욕 10%, 주·야간보호 9%, 방문간호 1%, 단기 보호 1%로 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의 도움이 있는 경우 생활이 가능한 2~3등급 노인들의 경우 재가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으나, 현재 제공되는 3~4시간 단일 유형의 재가서비스로는 케어의 불충분성이 존재하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에는 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방문요양서비스 위주의 재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과 함께 재가서비스의 통합서비스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재가급여 지출액은 최근 들어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가급여의 실효성과 불충분성 등에 대한 재가급여 확대 수요와 통합서비스화의 필요, 그리고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 인상, 요양인력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재가급여 지출은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가급여 지출액은
최근 들어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가급여 확대
수요와 통합서비스화의
필요, 수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가급여
지출은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급여유형별 지급액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가 급여	방문요양	11,736	13,119	14,809	16,076	18,916	24,364	30,071	35,889
	방문목욕	736	711	723	754	892	1,003	1,162	1,362
	방문간호	73	75	89	96	132	177	221	261
	주·야간보호	1,279	1,745	2,563	3,608	5,119	7,361	10,444	12,726
	단기보호	150	163	154	136	134	123	112	88
	복지용구	891	934	1,037	1,125	1,223	1,315	1,692	1,976
	재가급여 소계	14,864 (45%)	16,748 (44%)	19,376 (45%)	21,795 (46%)	26,417 (47%)	34,344 (50%)	43,702 (53%)	52,302 (55%)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3,909	15,839	17,892	19,844	21,971	25,879	30,634	33,41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057	2,394	2,548	2,538	2,549	2,769	3,027	3,109
	시설급여 소계	15,966 (48%)	18,234 (47%)	20,441 (47%)	22,382 (47%)	24,520 (44%)	28,648 (42%)	33,661 (40%)	36,525 (39%)
관리운영비	1,782	1,977	2,002	2,164	2,396	2,502	2,927	3,039	
기타	403	536	775	858	1,177	855	754	798	
총계	33,180	38,497	43,140	47,227	55,891	68,008	83,149	94,69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및 『연도별 장기요양 재정 현황』, 각 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등급체계 확대를 거듭하며
급속히 증가해왔으며,
등급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증가하였다.

IV.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성 제고 필요성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이용자 비율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는 고령화 가속화로 인한 후기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증가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포괄 대상자의 확대에 기인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인지지원등급의 포함(2018년) 등 등급체계 확대를 거듭하며 급속히 증가해왔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7%에서 2020년 약 10.6%로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가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설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영역 밖의 요양보험 입원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제적으로 볼 때도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시설이용 비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추이 및 비중

(단위: 천명, %)

연도	대상자 수(천명)			65세 인구 중 대상자 비율(%) ¹⁾		
	인정 대상자	등급외 대상자	대상자 합계	인정 대상자	등급외 대상자	대상자 합계
2010	270.3	67.3	337.6	5.04	1.25	6.29
2011	324.4	154.0	478.4	5.88	2.79	8.67
2012	341.8	153.7	495.4	5.93	2.67	8.59
2013	378.5	156.8	535.3	6.28	2.60	8.89
2014	424.6	160.8	585.4	6.76	2.56	9.33
2015	467.8	163.0	630.8	7.15	2.49	9.64
2016	519.9	161.2	681.0	7.69	2.39	10.08
2017	585.3	164.5	749.8	8.28	2.33	10.61
2018	670.8	160.7	831.5	9.10	2.18	11.28
2019	772.2	156.8	929.0	10.05	2.04	12.09
2020	858.0	149.4	1007.4	10.56	1.84	12.40

주: 1) 각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각 연도 자료 활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표 7>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¹⁾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국가명	2013년		2018년	
	재가	시설	재가	시설
호주	8.4	6.7	6.9	6.0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4.0	8.7	4.0
칠레	-	-	-	-
콜롬비아	-	-	-	-
체코	-	-	9.5	2.6
덴마크	12.7	4.0	11.0	-
에스토니아	6.7	4.7	5.6	5.0
핀란드	7.1	4.7	6.2	4.5
프랑스	6.4	4.4	5.9	4.2
독일	8.6	4.1	13.1	4.1
그리스	-	-	-	-
헝가리	10.5	3.0	8.9	3.0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3.7	-	3.3
이스라엘	19.6	2.1	18.7	1.6
이탈리아	4.8	-	6.1	-
일본	-	2.8	-	2.6
한국	4.2	2.5	6.2	2.7
라트비아	-	0.5	-	0.4
리투아니아	22.7	8.5	27.7	10.6
룩셈부르크	7.9	5.5	7.2	5.4
멕시코	-	-	17.2	-
네덜란드	13.4	5.6	8.0	4.2
뉴질랜드	9.9	4.8	10.0	4.3
노르웨이	11.9	4.9	11.2	4.1
폴란드	-	0.8	-	0.8
포르투갈	0.6	1.1	0.6	1.3
슬로바키아	-	3.5	-	4.2
슬로베니아	6.6	4.9	6.7	4.8
스페인	5.0	1.8	8.8	2.2
스웨덴	11.4	4.9	12.4	4.3
스위스	14.2	6.1	17.1	5.6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7.5	2.4
평균 ²⁾	9.6	4.0	10.1	3.8

주: 1)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3년과 2018년 해당 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평균으로 2013년의 재가 20개국, 2013년의 시설 25개국, 2018년의 재가 24개국, 2018년 시설 26개국 평균임

출처: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OECD 회원국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재가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시설급여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등급 대상자는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는 돌봄과 의료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증 대상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대상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대상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5.0%로 감소한 반면, 4등급 대상자는 2020년 약 44.1%로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 효과성에 관한 판단 근거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은 2014년 85.9%에서 2019년 83.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중증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경증인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양등급 1등급인 중증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2014년 82.6%에서 2018년 기준 76.8%로 지속적으로

<표 8>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대상자 등급별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합계
2010	31.4 (11.6%)	63.7 (23.6%)	175.3 (64.8%)	-	-	-	270.3 (100.0%)
2011	41.3 (12.7%)	72.6 (22.4%)	210.4 (64.9%)	-	-	-	324.4 (100.0%)
2012	38.3 (11.2%)	70.6 (20.7%)	232.9 (68.1%)	-	-	-	341.8 (100.0%)
2013	37.3 (9.9%)	71.8 (19.0%)	269.4 (71.2%)	-	-	-	378.5 (100.0%)
2014	37.7 (8.9%)	72.1 (17.0%)	170.3 (40.1%)	134.0 (31.6%)	10.5 (2.5%)	-	424.6 (100.0%)
2015	37.9 (8.1%)	71.3 (15.2%)	176.3 (37.7%)	162.8 (34.8%)	19.5 (4.2%)	-	467.8 (100.0%)
2016	40.9 (7.9%)	74.3 (14.3%)	185.8 (35.7%)	188.9 (36.3%)	29.9 (5.8%)	-	519.9 (100.0%)
2017	43.4 (7.4%)	79.9 (13.6%)	196.2 (33.5%)	23.9 (38.3%)	42.0 (7.2%)	-	585.3 (100.0%)
2018	45.1 (6.7%)	84.8 (12.6%)	211.1 (31.5%)	264.7 (39.5%)	53.9 (8.0%)	11.3 (1.7%)	670.8 (100.0%)
2019	44.5 (5.8%)	86.7 (11.2%)	226.2 (29.3%)	325.9 (42.2%)	73.3 (9.5%)	15.6 (2.0%)	772.2 (100.0%)
2020	43.0 (5.0%)	87.0 (10.1%)	238.7 (27.8%)	378.1 (44.1%)	92.0 (10.7%)	19.2 (2.0%)	772.2 (1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가공

<표 9>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등급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¹⁾	전체	85.9	85.5	85.2	84.9	83.5	83.0
	1등급	82.6	81.5	80.5	79.1	76.8	76.1
	2등급	86.9	86.4	85.9	85.2	84.3	83.7
	3등급	88.2	88.1	88.2	87.9	87.3	86.9
	4등급	86.4	86.6	86.8	86.7	86.3	85.9
	5등급	46.1	56.0	60.2	66.9	70.9	70.9
	인지지원					24.2	24.8

주: 1)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계산 시 인정자 중 포기자는 제외하고 계산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2019, p. 44 자료를 재인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급여의 필요도가 높은 1등급 중증노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요양병원 이용 증가 현상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비교적 경증인 장기요양보험 5등급의 요양서비스 이용률은 2014년 46.1%에서 2018년 70.9%로 증가하고 있어, 경증 노인의 불필요한 시설이용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치매국가책임제 대상자와도 중첩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불필요한 시설이용 및 요양병원 장기 입원 현상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증가와 함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지지원등급 등 경증 대상자의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짐에 따라 재가급여 이용자 수의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0년의 경우 77.4%, 시설급여 수급자는 27.5%로 나타나고 있다. 재가급여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시설이용률은 OECD 회원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시설이용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이 증가하여 시설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 필요도가 낮은 경증 노인으로 굳이 시설입소나 병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은
2014년 85.9%에서
2019년 83.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나, 비교적 경증인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27.5%,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체의 77.4%이다. 높은 시설이용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증 노인의 시설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임에도 시설이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1등급 판정자가 5.4%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률은 32.08%(2016년)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이용 필요도가 낮은 5등급 대상자의 약 5.4%, 4등급 대상자의 19.5%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재가급여 활성화를 통한 탈시설이라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요양병원 입원과 장기입원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이용 증가는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논함에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입원 및 시설입소 필요도가 높다고 여겨질 수 있는 1~2등급 대상자의 증가율이 경증 대상자의 증가율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수는 급속하게

<표 10> 급여종류별 급여이용 수급자 추이(2013~2020년)

(단위: 명, %)

연도	총이용자 ¹⁾		재가급여		시설급여	
	급여이용 수급자	작년 대비 증가율	급여이용 수급자	작년 대비 증가율	급여이용 수급자	작년 대비 증가율
2013	399,591 (100%)	-	271,881 (68.0%)	-	155,868 (39.0%)	-
2014	433,779 (100%)	8.6%	298,190 (68.7%)	9.7%	163,850 (37.8%)	5.1%
2015	475,382 (100%)	9.6%	330,695 (69.6%)	10.9%	175,412 (36.9%)	7.1%
2016	520,043 (100%)	9.4%	366,920 (70.6%)	11.0%	184,549 (35.5%)	5.2%
2017	578,867 (100%)	11.3%	417,494 (72.1%)	13.8%	196,210 (33.9%)	6.3%
2018	648,792 (100%)	12.1%	477,673 (73.6%)	14.4%	209,518 (32.3%)	6.8%
2019	732,181 (100%)	12.9%	554,190 (75.7%)	16.0%	218,240 (29.8%)	4.2%
2020	807,067 (100%)	10.2%	624,622 (77.4%)	12.7%	221,667 (27.5%)	1.6%

주: 1) 총급여이용 수급자는 집계기간 내 재가 및 시설급여 간 중복을 배제한 이용자 수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단순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증가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같은 선택지하에 있는 유사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 전 건강보험제도하의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던 것이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요양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 및 의료서비스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에도 요양병원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중증 대상자의 증가율이
경증 대상자의 증가율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11〉 연도별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기관 수¹⁾

(단위: 개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가 서비스 기관 ²⁾	방문 요양	4,206	8,446	9,164	8,709	8,500	8,620	9,073	10,077	11,072	11,662	12,335	15,305	15,412
	방문 목욕	2,959	6,279	7,294	7,162	7,028	7,146	7,479	8,253	8,957	9,357	9,665	11,121	11,086
	방문 간호	592	787	739	692	626	597	586	574	598	650	682	795	774
	주·야간 보호	790	1,106	1,273	1,321	1,331	1,427	1,688	2,018	2,410	2,795	3,211	4,179	4,587
	단기 보호	694	1,368	199	234	257	368	322	299	267	218	179	162	148
	복지 용구	720	1,086	1,278	1,387	1,498	1,574	1,599	1,700	1,823	1,892	1,920	1,975	1,941
	소계	6,618	11,931	11,228	10,857	10,729	11,056	11,672	12,917	14,211	15,073	15,970	19,410	33,948
요양 시설	노인 요양 시설	1,379	1,695	2,408	2,489	2,588	2,498	2,714	2,935	3,137	3,289	3,389	3,604	3,850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321	934	1,343	1,572	1,739	2,150	2,157	2,150	2,050	2,015	1,931	1,939	1,913
	소계	1,700	2,629	3,751	4,061	4,327	4,648	4,871	5,085	5,187	5,304	5,320	5,543	5,763
요양병원 ³⁾	690	777	867	988	1,103	1,232	1,337	1,372	1,428	1,529	1,560	1,577	1,582	

주: 1)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2) 재가서비스기관의 합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서비스 기관 수를 제외한 합계임

3) 연도 말 자료(12월, 4분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재가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의 불충분성과 돌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시설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설과 요양병원의 증가가 소규모 개인시설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불필요한 시설이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급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반드시 시설급여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 공급기관도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영여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급기관들은 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대체로 하루 3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가 노인의 돌봄 필요도를 충족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재가급여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122개의 통합재가기관이 등록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민간시설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 제공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의 확대에는 재정 측면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원 등 공공부문 운영 재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저변을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가서비스의 이용보다는 가족의 돌봄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노인부부나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돌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확대는 가족돌봄의 미숙함과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들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기술적, 정서적 교육제공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돌봄 수요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인력의 양적, 질적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AI 및 ICT 기술 등을 활

용한 스마트 돌봄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돌봄서비스 영역은 돌봄로봇 등 고령친화 산업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스마트돌봄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활발한 재정투자와 산업화 등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급여체계와 본인부담금

경증 노인들의 불필요한 시설이용의 증가와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현상은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제도하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월평균 금액은 재가급여 약 19만원, 시설급여 약 59만원, 요양병원 약 80만원으로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부담이 전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환급제를 적용받게 되어 실제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28만원 정도로 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 비용이 적게 되고 재가급여 이용 비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루 기준 약 3~4시간 사용하는 재가급여와 24시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월평균 금액은
요양병원이 가장 높으나,
본인부담상한환급제
적용으로 인해 실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요양시설보다 적고
재가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2> 장기요양급여서비스와 요양병원 월평균 비용

(단위: 원, 시간)

구분	재가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총합(A+B)	1,276,300원	2,047,200원	2,681,550원
법정급여합계(A) = (a+b)	1,276,300원	2,047,200원	1,613,550원
보험자부담(a)	1,084,855원	1,457,760원	811,800원
법정본인부담(b)	191,445원	589,440원	801,750원
식비(50%)		225,000원	260,550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c) ¹⁾	-	-	522,960원
실질법정본인부담(b-c)	191,445원	589,440원	278,790원
국고부담합계(a+c)	1,084,855원	1,457,760원	1,334,760원
비급여본인부담(B) (간병비)	-	-	1,068,000원
일 이용시간	3~4시간	24시간	24시간

주: 1. 재가서비스 및 노인요양시설: 3등급,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기준

1) 본인부담상한액: 360일 입원 기준, 소득분위 전체의 평균금액

출처: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노인의료지원사업군』, 2020.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의 대체제로
기능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없이는
시설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유인 제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보호의 시설급여서비스나 요양병원 입소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본인부담금 체계의 비효율적 유인 제거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설입소 시 거주비나 식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화하여 불필요한 시설이용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도 시설급여에서 식비와 거주비는 본인부담으로 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내의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의 대체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없이 시설 본인부담금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유인 제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기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상이한 두 제도하의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통한 가격기제의 활용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이 선결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통합판정시스템 등의 구축, 요양병원의 재활 기능정립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시설의 필요 의료서비스 연계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 유인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

4.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과 요양기관 평가체계

비교적 경증인 노인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의 증가는 요양병원 선호현상에 기인하기도 한다. 앞서 1등급 노인의 시설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실에서도 가늠하였듯이, 대체로 요양시설에 비해서는 요양병원 선호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시설의 환경과 서비스의 질이 개선의 여지가 많고,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요양시설의 2018년 정기평가 결과 요양시설의 20.6%, 방문요양기관의 10%가 최하위 등급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19)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시설의 서비

스 질 문제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소규모 시설의 경우 평가가 좋지 못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25%가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0인 미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1%, 10~30인 미만 요양시설도 21.4%가 최하위 등급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이러한 현상은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도 유사하여 10인 미만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최하위 등급비율이 23.7%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는 최근 들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요양시설평가가 강화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일정 기준 이하 시설들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도 필요할 수 있다. 현행 요양기관 설립은 인증제가 아닌 지정제로,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설립신고를 시·군·구가 설립·지정하고 이후 이를 지도 감독하는 지정제이다. 요양기관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진입 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전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실효성 있는 환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요양기관 지정을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갱신토록하여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정갱신제 시행 시 갱신주기나 평가주기를 보다 실효성 있게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노인돌봄 부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지자체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 부문 사업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등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재원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방비 등 다양하다. 노인돌봄 및 요양서비스 부문의 근간을 이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경증노인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들과 대상자들의 중복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경증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 지원 기관도 확대되고 있다. 노인건강과 관련된 예방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 보건소 전달체계를 활용한 건강관리

최근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와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일정 기준 이하 시설의 진입을 통제하는 기전도 필요할 수 있다.

**다양한 전달체계와
재원으로 인한 노인돌봄
부문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서비스의 연계와 맞춤형
제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및 예방부문 서비스들이 일차의료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하의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기능의 중첩성을 넘어, 법적·제도적·재원적 차이로 인해 시설과 요양병원의 제도적 개선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치매국가책임제하의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증 대상자와 대상자가 유사한 가운데, 치매전담관리 역할 수행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대상자와 기능이 장기요양보험과 중첩되는 재정지원 센터들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중첩적인 등급의 인정자 등 경증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로 단순 안부확인 등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또한 인지기능저하 검사 등의 조기검사 기능에 치중되고 있고 상당히 중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들 센터들의 예방관리적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치매환자 재가돌봄서비스 기능이 미흡하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부족하여 중증치매로의 이행을 예방관리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히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치매전문병동의 서비스 제공 강화 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노인돌봄 부문의 사업들이 부처 및 법령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소관 부처, 운영기관, 법령, 관리시스템, 재원 등이 각각 다른 서비스 기관들이 일부 중첩되어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인력과 재원이 양적으로 투입되지만, 정작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어려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서비스에 더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흩어져 있는 서비스 중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 자원에 대한 안내와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비스의 연계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소 등과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돌봄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행의 주된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판정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공단이 주로 수행하고 있고 관련 인력과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연계에 있어서도 공단의 역할이 큰 상황이다.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대상자 판정과정부터 보험과 지역사회서비

스의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한 일본의 사례를 한국형 모형으로 가져오는 것의 한계는, 지자체가 보험자이기도 한 일본의 경우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있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각기 다른 법령 하에서의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관리, 지역자원 통합 연계를 통한 분절된 서비스 문제 개선, 일차의료서비스와의 기능 정립 및 연계 등의 과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지자체 역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 분야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노인돌봄과 건강분야 서비스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안내되고 연계되는 것이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의 협업하에 일련의 케어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다. 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요양병원 입원 필요도를 함께 판정하도록 하는 통합판정체계의 도입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현상들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과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돌봄과 의료서비스 확충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노인돌봄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제고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분절된 돌봄서비스 자원 및 지자체 자원들을 통합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 도입 등 노인돌봄 부문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 부문에 대한 AI 및 ICT 기술 등 스마트 돌봄의 활성화 및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도 필요하다.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고령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효과성을 제고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보험료율과 국고 및
지방비 투입의 증가
속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_____,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각 연도.
 _____, 『2020 건강보험 주요통계』, 2021.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건강분야 사업분석』, 2019.
- 김원식·김현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의료비 영향과 정책적 의의」, 『재정학 연구』 제13권 제2호, 2020, pp. 25~57.
-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 연도.
 _____,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 통계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각 연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운용계획 노인돌봄의료서비스 부문』, 2021.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노인의료지원사업군』, 202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한 주 세금 감면 총당 금지]

■ 미국 재무부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이하 ARPA)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¹⁾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사용하여 주 세금 감면에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ARPA 상쇄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

- 주에서 2021년 3월 3일부터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감소된 세수의 상쇄를 위해 ARPA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 해당 기간 동안 주에서 세금을 감면한 경우 감면된 세금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입을 충당한 방법과 그 출처를 입증해야 함

- 만일 ARPA기금이 주 세금 감면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은 미 재무부에 상환해야 함

■ 각 주에서는 ARPA기금을 사용하여 세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해 왔음

● 특정 주 세수의 감소가 없는 경우, 연방정부가 ARPA기금을 회수할 수 없음

● 미 재무부는 최종 규칙 내 상쇄금지조항의 합헌성을 설명함

- 주에서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을 위해 ARPA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주 수입 감소를 상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미 의회는 미국 헌법의 지출조항에 의해 ARPA기금과 같은 연방 보조금의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ARPA 자금 사용에 대한 조건이 주에서 기금 수령을 요청하기 전 공지되기 때문에 상쇄금지조항에 강제성이 없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나현 변호사>

[영국 - 디지털세 필라2 이행 관련 국내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22년 1월 11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합의안의 영국 내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consultation) 절차를 개시함²⁾

● 금번 의견수렴 요청문서는 필라2 내용을 요약하고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었으며, 필라2

1) IBFD, "COVID-19 Pandemic: US Treasury Issues Final Rule on Pandemic-Related Legislation, Keeps Restrictions on State Tax Cut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1_us_5.html, 검색일자: 2022. 1. 25.

2) 영국 재무부, "OECD Pillar 2 -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2022. 1. 11.,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ecd-pillar-2-consultation-on-implementation>, 검색일자: 2022. 1. 20.

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의견을 요청한 주요 내용은 후술함³⁾

- 정책 당위성(policy rationale) 및 설계 특성(design feature)이 아닌, 이행(implementation) 관련 사항이 의견제출 대상임을 명시함

● 영국에 본사를 둔 소규모⁴⁾ 그룹에도 필라2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⁵⁾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의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힘

- 소규모 그룹이 상당한(substantial) 해외 영업 부문을 가질 가능성이 낮음

- 영국의 모기업 위치로서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감소시킴

- 소규모 그룹에 상당한 수준의 이행 및 행정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 필라2 적용 그룹을 대상으로 영국 자체적인 내국최저추가세(Domestic Minimum top up Tax: DMT) 도입 시, DMT 적용 대상을 영국에 본사를 둔 그룹으로 한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세수보호와 간소화 측면에서 검토할 것임을 언급함

- 세수보호(revenue protection): 외국 관할국에

서 영국소재 회사의 저율과세 과세소득(low-taxed profits)에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필라2 규정(의도)에 부합할 수 있음

- 간소화(simplification): 영국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 Taxed Payments Rule: UTPR)⁶⁾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이행부담(compliance burden)을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감소시킬 수 있음

● 영국 세원을 중요한 위협(material risk)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BEPS) 조치와 관련한 이행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을 요청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필라2의 도입이 BEPS 조치의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BEPS 조치들은 특정한 조세전략(specific tax planning) 위협에 대응하도록 고안되었으나, 필라2는 동 위협에 직접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음

- 영국의 법인세율은 25%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글로벌 최저한세율(15%)과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전략에 대한 잠재적인 유인

3) OECD가 주도하는 필라2 합의는 글로벌 기준수익(7.5억유로(약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그룹에 최저한세율(15%)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내용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021. 12. 2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44>, 검색일자: 2021. 1. 20.).

4) Sub-€ 750m groups(글로벌 기준수익 7.5억유로(약 1조원) 미만 그룹)를 의미함

5)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모회사의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예외 존재)을 부담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 10. 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0>, 검색일자: 2021. 1. 20.).

6)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을 부담함(기획재정부,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020. 10. 13.,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0>, 검색일자: 2021. 1. 20.).



(incentive)과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필라2는 글로벌 기준수익⁷⁾을 초과하는 다국적 그룹에만 적용되므로, 그 이외의 그룹·회사에는 BEPS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게 됨

- 의견수렴 마감일은 2022년 4월 4일이며, 필라2는 2022년 국내 입법, 2023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 중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정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반 조세제도 또는 소규모 기업 조세제도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고정세율 제도를 선택할 수 없음

- 해당 소규모 개인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는 2022년부터(2021년도 소득), 부가가치세는 2021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정 과세표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벨기에 - 특정 직업군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고정세율 폐지]

■ 벨기에 재무부는 2022년 1월 14일, 특정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던 고정세율 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⁸⁾

- 기존에 제도가 적용되던 납세자는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규 납세자는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 새롭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관청 및 관련 직업군의 협의를 통한 고정 과세표준 적용 예외의 방식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 고정세율 제도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자별로 고정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고정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⁹⁾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유형화하여 고정세율을 적용함
- 적용 대상은 연매출이 75만유로¹⁰⁾ 미만이고 송장 발행이 거래액의 최대 25%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임
- 해당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정육점,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헤어 디자이너, 구두 수선인, 우유 배달원, 식품소매상, 노점 상인, 신문 판매인, 섬유 및 가죽 제품 상인, 제약사 등임

7) 글로벌 기준수익 7.5억유로(약 1조원)를 의미함

8)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SUPPRESSION DE RÉGLEMENTATIONS FORFAITAIRES TANT EN MATIÈRE DE TVA QUE D'IMPÔTS SUR LES REVENUS," <https://finances.belgium.be/fr/Actualites/suppression-reglementations-forfaitaires-tva-isr-2022-01-14>, 검색일자: 2022. 1. 24.; IBFD, "Belgium Abolishes Flat-Rate Income and VAT Regimes for Certain Professions," 2022. 1. 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20_be_2.html, 검색일자: 2022. 1. 24.

9) Service Public Fédéral FINANCES, "RÉGIME FORFAITAIRE," <https://finances.belgium.be/fr/entreprises/tva/assujettissement-tva/regime-forfaitaire#q1>, 검색일자: 2022. 2. 11.

10) 2022년 2월 8일 기준 원환 환산 시 약 10억 2,618만원임

- 부가가치세율은 재화에 따라 21%, 12%, 6%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정세율 제도에 따르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별로 21%, 12%, 6% 중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었음¹¹⁾

- 특정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직업공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정 과세표준의 예외를 허용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스위스 - 디지털세 필라2 최저한세 이행 결정]

■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22년 1월 12일, 헌법을 개정하여 OECD/G20의 필라2 최저한세(15%)를 이행하기로 결정함¹²⁾

- 연방 의회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법적 확실성을 위해 새로운 헌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2023년 6월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¹³⁾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한시법을 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 한시법에는 스위스의 주(canton)¹⁴⁾가 최저한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임¹⁵⁾

- 한편, 재무부 장관은 자국의 경쟁력을 위해 각 주(canton)는 최저한세 도입 후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함¹⁶⁾

- 스위스는 연방 법인세율 8.5%에 더하여 주별로 법인세율을 정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법인세율은 약 14.9%로,¹⁷⁾ 낮은 법인세율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주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

- 재무부 장관은 ‘지속성 및 기술적 노하우’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며,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 등 세제혜택 제공을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11) my MINFIN, "Table des matières - Règlements forfaitaire en matière de TVA - 2020," <https://eservices.minfin.fgov.be/myminfin-web/pages/fisconet/document/68aa4c0e-7eb5-4ebe-a90f-2fb95c1c3135>, 검색일자: 2022. 2. 11.

12) Der Bundesrat, "Implementation of OECD minimum tax rate by constitutional amendment,"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edia-releases-federal-council.msg-id=86783.html>, 검색일자: 2022. 1. 28.

13) Bloomberg Law, "Switzerland Intends to Implement 15% Minimum Tax as of 2024 (2)," 2022. 1. 14.,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QJH2OK000000?bc=W1siU2VhcmNoLmFjc3VsdHMl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14) 스위스는 26개의 주(canton)로 구성된 연방 국가임

15) Bloomberg Law, "Switzerland Cabinet Approves Temporary Regulation on Global Minimum Tax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22. 1. 1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BCP1FGG000000?bc=W1siU2VhcmNoLmFjc3VsdHMl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16) Bloomberg Law, "Swiss FinMin Floats Idea of Local Tax Cuts for High Earners: NZZ," 2022. 1. 1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8HTLQV0000000?bc=W1siU2VhcmNoLmFjc3VsdHMlLCl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zFiZmUyZGYwYTg0OGMzN2Q5ZDU3NWY2NWUxMjc3ODciXV0-cad7e18886351f8dec1ffbc2ede8028466ca88a>, 검색일자: 2022. 2. 7.

17) KPMG, "International fight over tax revenue jeopardizes Switzerland's attractiveness as a location," 2021. 4. 22., <https://home.kpmg/ch/en/home/media/press-releases/2021/04/international-fight-over-tax-revenue-jeopardizes-switzerlands-attractiveness-as-a-location.html>, 검색일자: 2022. 2. 11.



[이탈리아 - 2022년 예산법안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2022년 예산 법안을 관보에 게재함¹⁸⁾

-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율 및 근로소득 공제를 개정하고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와 설탕세의 시행 연기 등이 있음
- 2022년 예산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 12월 30일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어 2022년 12월 31일 관보 제310호로 공포됨

■ 법인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¹⁹⁾

- 특허박스 제도가 개정되어 법인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인정금액이 기존 90%에서 110%로 상향됨
- 이탈리아 거주기업 또는 이탈리아와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정보교환이 가능한 상대국의 기업은 지식재산권(IP)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 특수 관계가 없는 기업에 이전(outsource)하는 때

<표 1> 2022년 예산법안의 법인세 투자소득 세액공제 구간

구분	매수시기	투자금액	세액공제 범위	
투자 소득	유형 자산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250만유로	40%
		2022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250만 초과~1,000만유로 이하	20%
			1,000만 초과~2,000만유로 이하	10%
	무형 자산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2022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 지급 완료	투자금액별 공제율 적용
			250만유로	20%
			250만 초과~1,000만유로 이하	10%
기타 자산	2023년 1월 1일~2026년 6월 30일	1,000만 초과~2,000만유로 이하	5%	
		2025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 지급 완료	투자금액별 공제율 적용	
기타 자산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실제투자금액	6%	
	2022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2022년 말까지 매수 확정 및 매수대금의 20% 이상 실제 지급 완료	유형자산은 200만유로 무형자산은 100만유로	

출처: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8.

18)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Enacts Tax Measures To Reduce Tax Burden on Workers and Businesse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1.html, 검색일자: 2022. 1. 20.

19)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0.

<표 2> 2022년 예산법안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구간

구분	회계연도	세액공제 범위	최대 세액공제금액
R&D 비용	2022 회계연도	20%	연간 400만유로
	2023 회계연도~2031 회계연도	10%	연간 500만유로
기술혁신 및 디자인 활동 비용 ¹⁾	2022 회계연도~2023 회계연도	10%	연간 200만유로
	2023 회계연도~2024 회계연도	5%	
기술혁신 및 신규표본개발 비용 ²⁾	2022 회계연도	15%	연간 200만유로
	2023 회계연도	10%	연간 400만유로
	2024 회계연도~2025 회계연도	5%	연간 400만유로

주: 1) 디자인 및 미적 발상 활동

2) 특정 사업 부문에서 신제품 또는 표본 구현 활동

출처: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Patent Box Regime and Investments Tax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2.html#tns_2022-01-14_it_2 검색일자: 2022. 1. 28.

에 개정된 특허박스 규정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용은 납세자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특허, 디자인 및 모델과 관련된 비용임

- 신규 사업 자산구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범위가 <표 1>과 같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되어 개정됨
- 연구개발활동비, 기술혁신 및 기타 혁신활동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표 2>와 같이 개정됨
- 중소기업(SMEs)의 EU 및 EEA 국가 상장에 필요한 자문비용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의 최대 50%(연간 20만유로)²⁰⁾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정 조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기존

2021년 12월 31일) 이월법인세 손실과 관련된 이월법인세 자산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음

■ 개인 소득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²¹⁾

-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 공제금액이 <표 3>, <표 4>와 같이 개정됨
- 아래의 적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발생한 일정 비용
 - 부동산의 보수를 위해 발생한 특정 비용
 -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가구 구매에 발생한 비용으로 회계연도 2022는 1만유로, 회계연도

20)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7,465만원임

21)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표 3>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1)

(단위: 유로, %)

구분	기존 과세소득	기존 세율	개정된 과세소득	개정된 세율	근로소득 공제액
근로소득	최대 15,000유로	23%	최대 15,000유로	23%	1,880
	15,000 초과~28,000유로 이하	27%	15,000 초과~28,000유로 이하	25%	$1,910 + 1,170 \times [(28,000 - \text{과세소득}) / 13,000]$
	28,000 초과~55,000유로 이하	38%	28,000 초과~50,000유로 이하	35%	$1,910 \times [(50,000 - \text{과세소득}) / 22,000]$
	50,000 초과~75,000유로 이하	41%	50,000유로 초과	43%	-
	75,000유로 초과	43%			

출처: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informazioneFiscale, "IRPEF 2022, aliquote e scaglioni: come fare il calcolo,"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IRPEF-2022-aliquote-scaglioni-calcolo-novita>, 검색일자: 2022. 2. 11.

<표 4> 2022년 예산법안의 개인소득세 구간(2)

(단위: 유로)

구분	과세소득	개인소득 공제액
연금소득	최대 8,500유로	1,955
	8,500 초과~28,000유로 이하	$700 + 1,255 \times [(28,000 - \text{과세소득}) / 19,500]$
	28,000 초과~50,000유로 이하	$700 \times [(50,000 - \text{과세소득}) / 22,000]$
	50,000유로 초과	-
사업 및 기타소득	5,500유로 이하	1,265
	5,500 초과~28,000유로	$500 + 765 \times [(28,000 - \text{과세소득}) / 22,500]$
	28,000 초과~50,000유로 이하	$500 \times [(50,000 - \text{과세소득}) / 22,000]$
	50,000유로 초과	-

출처: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Amend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Earned Income Credits," 2021. 10. 14.,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3.html#tns_2022-01-14_it_3, 검색일자: 2022. 1. 20.

2023 및 2024는 5천유로(기존 1,600유로)까지 가능²²⁾

- 녹화 프로젝트(greening projects)에 대한 비용
- 건물 외벽 리모델링 등 건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된 비용의 경우 7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적용 가능한 비용의 범위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3만유로에서 5만유로²³⁾ 사이임
- 농지 소유권과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기간이 2022 회계연도까지 연장됨

■ 간접세에 대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음²⁴⁾

- 여성위생용품에 대해 10%로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적용함
- 가정과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공급에

22)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73만원, 686만원 및 219만원임

23)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119만원, 6,866만원임

24) IBFD, "Budget Law for 2022: Italy Further Postpones Entry into Effect of Plastic Tax and Sugar Tax," 2022. 1.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4_it_4.html, 검색일자: 2022. 1. 20.

- 대해 5%로 인하된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연장됨
- 기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한시적 인하 혜택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장됨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와 설탕세 시행을 연기함
- 당초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함
- 만 35세 이하 개인이 처음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세, 주택담보세 및 토지세 적용 면제가 연장됨
- 기존 2022년 6월 30일까지였던 면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스페인-창업 촉진을 위한 신규 세금 인센티브 법안 승인]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12월 10일, 창업 촉진을 통한 국제적 인재와 자본 유치를 위해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법안을 승인함²⁵⁾
- 해당 법안은 2021년 12월 27일 제121호/000081로 공포됨
- 창업 촉진 세금 인센티브는 다음의 신규 또는 최근에 설립된 법인에 적용됨²⁶⁾

- 합병 또는 분할의 결과로 나타난 기업이 아닌 경우
- 스페인에 영구적인 시설을 보유한 경우
- 직원의 60% 이상이 스페인과 계약된 상태인 경우
- 국가혁신기업으로 간주된 경우
-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
-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나 생명공학, 에너지 및 산업공학 기업의 경우 7년 이내인 경우
- 창업 촉진 인센티브 관련 법인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⁷⁾
-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 첫해와 다음 3년간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함
-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 최초 1년 또는 2년간은 법인세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이 경우 세무당국은 6개월 또는 1년간 연체이자나 담보 제공을 면제함
-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최초 2년간 법인세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분납금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됨

- 창업 촉진 인센티브 관련 소득세 혜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²⁸⁾
- 스톡옵션의 최소 연간 면제수익을 1,200유로에서 5만유로²⁹⁾로 확대하며, 5만유로를 초과하는

25) IBFD, "Government Amends Bill of Start-up Law to Further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2.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0_es_2.html, 검색일자: 2022. 1. 20.

26) IBFD, "Spain Plans To Create New Tax Incentives To Promote Start-Up Companies," 2021. 7. 26.,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1-07-26_es_1.html#tns_2021-07-26_es_1, 검색일자: 2022. 1. 20.

27) IBFD, "Spain Plans To Create New Tax Incentives To Promote Start-Up Companies," 2021. 7. 26.,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1-07-26_es_1.html#tns_2021-07-26_es_1, 검색일자: 2022. 1. 20.

28) IBFD, "Government Amends Bill of Start-up Law to Further Increase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2. 1.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10_es_2.html, 검색일자: 2022. 1. 20.

29)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4만원, 6,866만원임



비 면제금액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과세기간에 포함함

-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 주식이 납세자에 의해 이전된 경우
- 상기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로부터 10년 후
- 신규 또는 최근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을 6만유로에서 10만유로³⁰⁾로 확대함
- 또한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세액 공제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직접 또는 간접 참여의 40%를 초과할 수 없는 출자금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12년까지 유지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포르투갈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세부정보 발표]

- 포르투갈은 2022년 1월 5일,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포장용기와 이들의 복합포장용기에 대해 부과하는 신설 세금인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함³¹⁾
- 해당 세금은 EU 지침 2019/904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법률 제152-D호/2017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0년 10월 14일 법률 제86호/2020에

의해 일부 수정됨^{32), 33)}

- 다음 유형의 음식 포장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판매 장소에서 포장하지 않은 포장음식이 담긴 일회용 포장용기
 - 주로 앉아서 식사하지 않는 레스토랑(즉석식품 판매장) 또는 음료판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포장용기
 - 자동판매기를 통해 제공되는 포장음식의 일회용 포장용기

- 다음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과세 대상자가 수출하는 경우
 - 과세 대상자 또는 그를 대신하는 제3자가 다른 EU 회원국으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 아조레스(Azores) 및 마테이라(Madeira) 자치구로 발송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 사회연대기관에서 식사 기부 또는 음식 분배 등 사회적 또는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세는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청구서에 명시되어야 함

30) 2022년 2월 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239만원, 1억 3,732만원임

31) IBFD, "Portugal Publishes Details on New Levy on Single-Use Plastic and Aluminium Packages," 2022. 1.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05_pt_1.html, 검색일자: 2022. 1. 20.

32) 일회용 플라스틱 세금은 일회용 포장용기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촉진과 포장용기 폐기물의 양을 줄이면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가 환경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할 목적으로 신설됨

33) CMS, "PLASTICS AND PACKAGING LAWS IN PORTUGAL," <https://cms.law/en/int/expert-guides/plastics-and-packaging-laws/portugal>, 검색일자: 2022. 1. 20.

- 일회용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복합포장용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일회용 알루미늄 포장용기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복합포장용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다량 관세사>

[네덜란드 - 원천징수와 관련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시행규칙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12월 22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 DTAs)에 따른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등의 조건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발표함³⁴⁾

-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Wet bronbelasting 2021)를 도입한 바 있음³⁵⁾
 - 2021 원천징수법안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5%임
-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조건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함³⁶⁾
- 시행규칙은 고시된 관보 발행일의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부터 발효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 주소, 설립 장소 및 기업 등록번호(Rechtspersonen en Samenwerkingsverbanden Identificatie Nummer: RSIN)
-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법인의 법인명, 주소 및 설립 장소
-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자 및 로열티 소득의 귀속에 대한 정보
-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 MLI) 제10(1)조, (2)조, (3)조 또는 OECD 모델협약 제29(8)조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조약조항의 적용에 관한 정보
- 비거주자법인이 거주자인 조약 상대국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송금과 관련된 정보 등
- 앞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조세조약에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언급된 기타 세부 정보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이 지급된 해의 다음 달 말일까지 비거주법인에 지급한 이자 및 로열티 총액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여야 함

- 개요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주소, 거주 국가 및 지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34) News IBFD, "Netherlands Publishes Regulations for Refunds, Exemptions for Interest and Royalty WHT Under DTAs," 2021. 1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27_nL7.html, 검색일자: 2022. 1. 21.

35) 네덜란드 상원, "Wet bronbelasting 2021," 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5305_wet_bronbelasting_2021, 검색일자: 2022. 1. 21.

36) 네덜란드 정부, "Wet bronbelasting 2021. Nederlandse uitvoeringsvoorschriften inzake belastingverdragen vastgesteld ten behoeve van het interestartikel en het royaltyartikel,"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stcrt-2021-48054.html>, 검색일자: 2022. 1. 21.



■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 무자에 의하여 이미 이자 또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징수된 비거주법인은 네덜란드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세조약상 요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세액의 모든 환급세액은 원천징수무자에게 지급됨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중국 -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 발표]

■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2월 29일, 개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을 발표함³⁷⁾

- 연간 일시불 상여금(year-end bonuses) 소득의 분리과세를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얻은 액수에 월 환산 세율표에 따라 확정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음³⁸⁾
- 개인 거주자 소득세 면제 세제혜택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표 5> 적격 외국인 거주자 비과세 혜택 항목

구분	비과세 대상	비고
1	생계 보조	외국국적 직원이 식대, 세탁비용 등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2	거주 보조	외국국적 직원이 주택 등 거주비용,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3	교육 보조	외국국적 직원 본인의 언어교육비 또는 직계 자녀 교육을 위해 수령한 수당
4	중국 경내 혹은 해외 출장비용	출장 시 교통·숙박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5	고국 방문 비용	외국국적 직원 본인의 고국 방문 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출처: 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 107의 내용을 저자 정리

- 납세자의 연간 종합소득³⁹⁾이 12만원⁴⁰⁾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400위안⁴¹⁾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중국 국세청은 2021년 12월 31일에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관련 세제혜택 연장도 발표함⁴²⁾

- 적격 외국인 거주자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획득한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함
 - 각종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유효 증빙문건을 소득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치울 연구원>

37) IBFD, "China Extends Several Individual Income Tax Incentives," 2021. 12.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1-12-30_cn_1.html, 검색일자: 2022. 1. 24.

38) 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 112.

39) 종합소득이란, 임금·급여(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급, 연말 보너스, 근로배당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 노무보수(개인이 각종 비고용 노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데, 설계, 장식, 광고, 전시, 중개서비스, 기타 노무 등), 원고료(개인이 작품을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 특허권사용료(개인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등 4개 항목 소득의 합을 말함(국세청, 『재중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2020. 5., pp. 104-106.)

40) 2022년 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64만원임

41) 2022년 1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원임

42) IBFD, "China Continues Tax Treatment of Benefits in Kind for Foreign Individuals," 2022. 1.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2-01-04_cn_1.html, 검색일자: 2022. 1. 24.



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담배 소비 수준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2024년 국가 중기 개발 계획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10~18세 인도네시아 어린이의 흡연율을 최소 8.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OECD - 주택 유효조세 측정 보고서 발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월 12일, (국별) 주택 유효조세 측정 보고서(Measuring Effective Taxation of Housing)를 발행함⁴⁶⁾

- 주택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⁴⁷⁾)을 자가(owner occupied) 여부와 차입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함⁴⁸⁾
 - 조사 대상국⁴⁹⁾ 평균은 [A⁵⁰⁾ << B⁵¹⁾ < C⁵²⁾ ≒ D⁵³⁾]의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크기 순으로 볼 때) 임대소득세, 차입이자비용공제(mortgage relief),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부유세(wealth tax) 효과가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우리나라는 [A << B < C ≒ D]의 패턴을 보였으며, A그룹의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자가거주의 차입이자비용공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임
- 조세의 형평성(equity) 검토를 위해 저소득(P)⁵⁴⁾, 평균소득(Q)⁵⁵⁾, 고소득(R)⁵⁶⁾ 납세자의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함
 - 조사 대상국 평균은 [P ≒ Q < R]의 패턴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P ≒ Q << R]의 패턴을 보였음
 - 고소득자는 보유주택이 많으므로, 주택에 대한 우호적 조세제도(favourable taxation)의 혜택(benefit)을 고소득자가 더 많이 보게 됨을 언급함
- 동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아이가 없는 독신(single) 개인(individual)이 20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함
 - 2016년 법정(statutory) 세율을 일괄 적용하였고, 납세자별 개별적 상황(specific circumstance)은 고려하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income)과 부(wealth) 간(間) 연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조정하였음

46) OECD, "Measuring effective taxation of housing," 2022. 1. 12., <https://www.oecd.org/tax/measuring-effective-taxation-of-housing-0a7e36f2-en.htm>, 검색일자: 2022. 1. 20.

47) 세후(post-tax) 수익률과 세전(pre-tax) 수익률의 차이로 측정되며, 투자의 추가단위에 대한 한계(marginal) 수익률이 취득·보유·처분 과정에서 과세되는 정도를 의미함

48) <<: 큰 차이가 남, <: 소폭 차이가 남, ≒: 유사함

49) 총 40개국이며, 37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의미함

50) A 그룹: 자가(owner occupied) + 차입(debt-financed)

51) B 그룹: 자가(owner occupied) + 비차입(equity-financed)

52) C 그룹: 임대(rented) + 차입(debt-financed)

53) D 그룹: 임대(rented) + 비차입(equity-financed)

54) 저소득(P): 평균 임금(wage)의 67%로 가정함

55) 평균소득(Q): 평균 임금(wage)의 100%로 가정함

56) 고소득(R): 평균 임금(wage)의 500%로 가정함

- 동 보고서는 국별 정책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납세자 세그먼트(segment) 및 중심변수(driver) 식별에 의의가 있음
- 분석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policy implication) 도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research)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정명 회계사>

[EU - 조세 목적상 페이퍼컴퍼니 오남용 방지 지침 제언]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22일, 페이퍼컴퍼니(shell entities) 및 기구(arrangement)를 조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언함⁵⁷⁾
- 세 가지 식별 기준(gateway)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함
 -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 자산의 장부 가치의 60% 이상이 회원국 밖에 위치하고, ‘관련 수익(이자수익과 기타 가상자산, 사용료,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리스, 보험, 부동산 소득 모두 포함)’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 최근 2년간 기업 수익의 75% 이상이 ‘관련 수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한 경우
- 기업이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하면 페이퍼컴퍼니

에서 제외되고,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는 기업은 일정한 불이익이 있음

- 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첫째, 진정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였고, 둘째, 조세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지 않음
- 기업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면 조약 또는 다른 EU 지침상 조세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EU 국가 내 거주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식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적용 제외(carve-out)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 기업군은 세금 신고 시 기업의 실재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적용 제외는 적용 제외 기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하게 규율되는 금융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고위험 기업군은 첫째,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고, 둘째, EU 내에 적어도 하나의 은행계좌가 있으며, 셋째, 적어도 1명의 관리자 또는 관련 종업원의 다수가 기업 근교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57) European Commission, “Fair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to end the misuse of shell entities for tax purposes within the EU,”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027, 검색일자: 2022. 1. 17.; EY, “European Commission publishes draft Directive for preventing the misuse of shell entities (UNSHELL),” https://www.ey.com/en_gl/tax-alerts/european-commission-publishes-draft-directive-for-preventing-the, 검색일자: 2022. 1. 17.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몰도바에 거시금융지원 발표(2022. 1. 4.)¹⁾
 - 집행위는 몰도바에 대한 최대 1억 5천만유로의 거시금융지원(MFA)²⁾ 안건을 채택
 - 이 중 3천만유로는 보조금, 1억 2천만유로는 저금리 중기 대출 형식으로 지원
 - 몰도바는 2020년 4월 10개국 30억유로 MFA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과 2021년 10월에 자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은 신규 지원임
 - 몰도바는 부패 및 거버넌스 문제로 지난 몇 년간 재정 및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최근에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도 직면해 있으며, 이번 지원이 몰도바의 단기 국제수지 및 재정 취약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몰도바는 거버넌스 시스템, 반부패, 법치 확립, 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결하는 등

지원 조건을 이행해야 함

- EU 통계청, 2021년 12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 상승률 발표(2022. 1. 20.)³⁾
 - (유로지역) 2021년 12월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 상승률(HICP⁴⁾)은 전월(4.9%)보다 상승한 5.0%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 근원 인플레이션⁵⁾은 전월(2.6%)과 동일한 2.6%로 집계
 - (EU) 2021년 12월 EU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전월(5.2%)보다 상승한 5.3%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 (국가별)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2.0%), 리투아니아(10.7%), 폴란드(8.0%) 순이며, 낮은 국가는 몰타(2.6%), 포르투갈(2.8%) 핀란드(3.2%) 순임
 - (부문별) 유로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9% 상승한 에너지가 절반(2.46%p) 가량 기여하였고 그 뒤로 서비스(1.02%), 비에너지 산업재⁶⁾(0.78%p), 식품, 주류 및 담배(0.71%p)가 기여
 - ECB 총재는 속도치 발표 후 COSAC 회의⁷⁾에 참

1) EU 집행위, "EU-Moldova: Commission proposes €150 million in Macro-Financial Assistance," 2022. 1. 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101, 검색일자: 2022. 1. 19.

2) 거시금융 패키지(Macro-financial assistance: MFA)는 EU의 인접 국가들 및 협력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의 일부로, 예외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 MFA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전제 조건(민주주의 원칙, 인권, 법치)을 충족해야 함. 2020년 4월 집행위의 MFA 발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4월 제2호, 2020 참조

3) EU 통계청, "Euro area annual inflation up to 5.0%," 2022. 1.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083883/2-07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1. 19.,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5.0% in the euro area," 2022. 1. 20.,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59/2-20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1. 21.

4)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HICP는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5)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기준

6) 비에너지 산업재(Non-energy industrial goods)는 의류 소재 및 의류, 신발, 가구 및 가전, 제약 제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의 품목을 포함

7) EU 회원국 의회들의 합동 회의

석해, 경제의 급속한 재개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했고 수급 불일치로 내구재 및 일부 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은 올해 중 완화(ease)될 것이라고 전망⁸⁾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선임연구원>



IMF

■ IMF, “Crypto Prices Move More in Sync With Stocks, Posing New Risks” 게시(2022. 1. 11.)^{9), 10)}

- IMF는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게시함
 - 2017~2019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미국 증시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과의 상관계수가 0.01에 불과했지만, 2020~2021년 동안 0.36으로 증가함
 - 이는 신흥 시장 경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MSCI 신흥국 지수와 비트코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2020~2021년에 0.34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함
 -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실시한 양적 완화 정책에 유동성이 늘어나 전통 자

산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헤징 자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기 때문임

- 암호화폐와 주식의 동조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암호화폐의 헤징 자산으로서의 이점이 제한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암호화폐와 주식의 상관관계는 주식과 금, 채권 등 기타 다른 전통 자산 간의 상관관계 보다 더 높아져 위험 다각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줌
 - 강한 상호 연관성은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처음과는 달리 헤징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암호화폐 자산은 더 이상 금융 시스템의 변두리에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과 가치 평가를 감안할 때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의 주된 용도에 맞는 규제를 갖춰야 하며, 암호화폐에 노출되거나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설정해야 함
 - 또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급속한 발전과 그로

8) 유럽중앙은행, “Introductory statement by Christine Lagarde, President of the ECB,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for Union Affairs of the Parliaments of the European Union(COSAC),” 2022. 1. 14.,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2/html/ecb.sp220114~fe1e70ec1a.en.html>, 검색일자: 2022. 1. 19.

9) IMF, “Crypto Prices Move More in Sync With Stocks, Posing New Risks,” 2022. 1. 11., <https://blogs.imf.org/2022/01/11/crypto-prices-move-more-in-sync-with-stocks-posing-new-risks/>, 검색일자: 2022. 1. 19.

10) 본 게시글은 해당 저자들의 견해이며, IMF, IMF 이사회, IMF 집행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음



인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러한 자산의 익명성과 제한된 글로벌 표준으로 인해 생성되는 데이터 격차를 신속하게 메꿀 필요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 근로자 수 100인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weekly test) 의무화 조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¹¹⁾의 해당 조치가 월권행위였다는 판결을 내림¹²⁾



미국

[기타]

- 미 연방대법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무효화 판결 (2022. 1. 13.)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고용통계 발표(2022. 1. 7.)¹³⁾
- (가계조사) 2021년 12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실업률은 3.9%로 전월 수치(4.2%) 대비 0.3%p 개선됐고, 두 수치 모두 전년 수치(61.5%, 6.7%) 대비 개선됨
- 고용률은 59.5%로 전월 수준에 비해 0.2%p 증가했고, 전년 대비 2.1%p 증가함

<표 1> 미국 가계조사 지표

(단위: 천명, 계절 조정)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261,230	261,766	261,908	262,029	262,136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0,671	161,471	161,610	162,126	162,294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1.5	61.7	61.7	61.9	61.9
취업자 수(Employed)	149,883	153,806	154,234	155,324	155,975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57.4	58.8	58.9	59.3	59.5
실업자 수(Unemployed)	10,789	7,666	7,375	6,802	6,319
실업률(Unemployment rate, %)	6.7	4.7	4.6	4.2	3.9

출처: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2. 1. 7.

11)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2)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2/01/13/1072165393/supreme-court-blocks-bidens-vaccine-or-test-mandate-for-large-private-companies>, 검색일자: 2022. 1. 20.

13)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2. 1. 7.,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tat.toc.htm>, 검색일자: 2022. 1. 17.

- 실업자 수는 631만 9천명으로 전월(680만 2천명)보다 감소했고 전년 대비(1,078만 9천명) 약 447만명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실업률은 3.5%였고, 실업자 수는 570만명 수준이었음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4,682만명으로 전월 대비 19만 9천명 증가했고, 2020년 4월 이후 1,880만명 증가했음
- 비농업 민간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19센트 증가한 31.31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29.91달러) 대비 약 4.7% 증가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 1. 12)¹⁴⁾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증가함
 - 2021년 연말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이 있었지만, 기업의 원자재 및 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소비지출은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에도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레저, 숙박, 레스토랑 등의 분야는 위축되었음
 - 기업들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표 2> 미국 사업체 조사 지표

(단위: 천명, 시간, 달러, 계절 조정)

구분	2020년12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¹⁾	2021년 12월 ¹⁾
전월 대비 고용자 수 변동					
비농업(Total nonfarm)	-306	379	648	249	199
민간(Total private)	-274	424	714	270	211
상품생산(Goods-producing)	82	65	100	72	54
민간서비스제공(Private service-providing)	-356	359	614	198	157
정부(Government)	-32	-45	-66	-21	-12
민간 근로시간 및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34.7	34.8	34.7	34.7	34.7
평균 시급	29.91	30.84	31.01	31.12	31.31
주당 평균 임금	1,037.88	1,073.23	1,076.05	1,079.86	1,086.46

주: 1) 잠정치

출처: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2. 1. 7.;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1. 12. 3.

14) Fed, Beige Book - January 2022, 2022. 1. 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1.htm>, 검색일자: 2022. 1. 18.



<표 3> 미국 물가 상승률(CPI-U)의 변화율

(단위: %)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든 항목	0.9	0.5	0.3	0.4	0.9	0.8	0.5	7.0
식료품	0.8	0.7	0.4	0.9	0.9	0.7	0.5	6.3
가정식	0.8	0.7	0.4	1.2	1.0	0.8	0.4	6.5
외식	0.7	0.8	0.4	0.5	0.8	0.6	0.6	6.0
에너지	1.5	1.6	2.0	1.3	4.8	3.5	-0.4	29.3
에너지 상품	2.6	2.3	2.7	1.3	6.2	5.9	-0.6	48.9
가솔린	2.5	2.4	2.8	1.2	6.1	6.1	-0.5	49.6
중유	2.9	0.6	-2.1	3.9	12.3	3.5	-2.4	41.0
에너지 서비스	0.2	0.8	1.1	1.2	3.0	0.3	-0.1	10.4
전력	-0.3	0.4	1.0	0.8	1.8	0.3	0.3	6.3
유틸리티 가스	1.7	2.2	1.6	2.7	6.6	0.6	-1.2	24.1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9	0.3	0.1	0.2	0.6	0.5	0.6	5.5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2.2	0.5	0.3	0.2	1.0	0.9	1.2	10.7
신차	2.0	1.7	1.2	1.3	1.4	1.1	1.0	11.8
중고차 및 트럭	10.5	0.2	-1.5	-0.7	2.5	2.5	3.5	37.3
의류	0.7	0.0	0.4	-1.1	0.0	1.3	1.7	5.8
의료 상품(medical care commodities)	-0.4	0.2	-0.2	0.3	0.6	0.1	0.0	0.4
에너지 제외 서비스	0.4	0.3	0.0	0.2	0.4	0.4	0.3	3.7
주거	0.5	0.4	0.2	0.4	0.5	0.5	0.4	4.1
교통	1.5	-1.1	-2.3	-0.5	0.4	0.7	-0.3	4.2
의료 서비스(medical care services)	0.0	0.3	0.3	-0.1	0.5	0.3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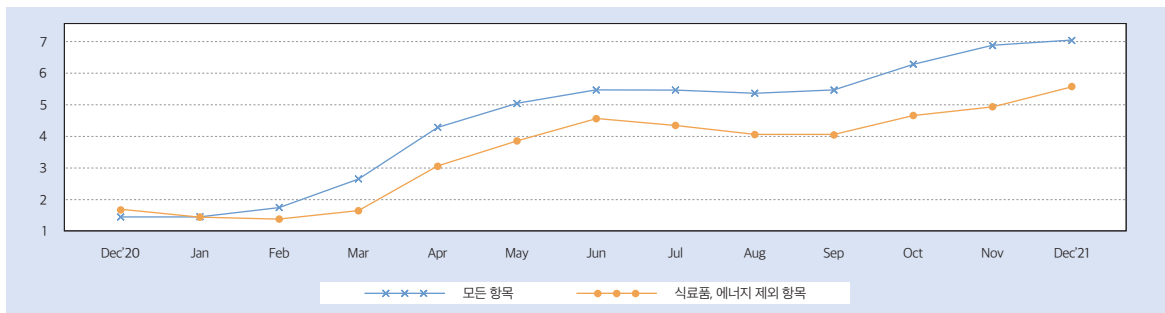
주: 1. 외식 항목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비는 조정되지 않음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January 2022, Table A, 2022. 1. 12.

[그림 1] 미국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출처: BLS, Consumer Price Index-January 2022, Chart 2, 2022. 1. 12.

로 전망했지만, 향후 몇 달 동안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다소 냉각되었다고 평가함

- (고용 및 임금) 연말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추가 수요가 높음
 -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았고, 노동 시장 경직성으로 강력한 임금 상승이 있었음
 - 특히,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승이 강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임금 혜택과 관련된 인건비 상승이 있었음
- (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 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지역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공급망 문제와 임금 상승에 기인함
 - 도매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압력은 서비스 및 상품 생산자에게 물가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일부 지역은 운송 병목 현상으로 특히 압력이 강했음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2022. 1. 12.)¹⁵⁾

- 2021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7.0%로 집계됨
 - 2021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6.8%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

은 0.5%로 11월(0.8%)에 비해 감소해 물가 상승률 감소세를 지속함

-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임
 - 식료품 항목의 소비자물가지표는 12월 0.5% 증가해 11월(0.8%) 대비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고, 에너지 제외 서비스(0.3%), 신차(1.0%), 중고차 및 트럭(3.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 에너지 항목은 12월 0.4% 감소해 11월(3.5%)까지 지속되던 물가 상승세가 반전되었고, 증유(-2.4%),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1.2%), 교통 서비스(-0.3) 등의 세부 항목에서도 물가가 감소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고 평가함
 - 유류 가격 하락과 식료품 가격 상승세 하락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률 완화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고, 가족 예산은 부족하다고 언급함
 -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처하고, 강력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선임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15) BLS, *Consumer Price Index - January 2022*, 2022. 1. 12.,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 1. 18.;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the Consumer Price Index*, 2022. 1. 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1/12/statement-by-president-biden-on-consumer-price-index/>, 검색일자: 2022. 1. 19.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회계연도* 2022년 예산정부안 추가 발표 및 국회 제출(2022. 1. 17.)^{16), 17), 18)}

* 일본의 회계연도(Fiscal year: FY)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에 해당됨

- 재무성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예산안¹⁹⁾에서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지출, 지방 관련 보조금, 예산편성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등에 대해 추가 발표함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67.3조엔으로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18.5조엔 규모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²⁰⁾(92.9조엔), 사회보장급부비²¹⁾(73.6조엔), 재정용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²²⁾에 의한 자금조달(25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19.8조엔)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7.3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0.7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이고, 이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사용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편입이 1.3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우 편입을 포함), 나머지는 그 외 세입(보험료 등)으로 조달

- (독립행정법인) 회계연도 2022년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지출은 전년 당초예산 규모 3조 1,124억엔에 비해 0.2% 증가(59억엔)한 3조 1,183억엔으로 편성
- (지방 관련 보조금 등) FY2022 지방 관련 보조금 총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2,404억엔)한 27조 4,629억엔으로 이 중 부흥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7조 2,756억엔 - 사회보장에 21.3조엔(78%), 문교 및 과학진흥에 2.2조엔(8%), 공공사업비에 2.7조엔(10%), 그 외 1.1조엔(4%)를 지출할 예정
- (국회 제출) 재무성은 2022년 1월 17일 FY2022 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²³⁾

16)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index.html, 검색일자: 2022. 1. 17.

17) 재무성, 「特別会計について」,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24.pdf, 검색일자: 2022. 1. 17.

18) 재무성, 「独立行政法人向け財政支出の全体像」,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25.pdf, 검색일자: 2022. 1. 17.

19) 재무성은 FY2021 제1차 추경과 함께 ①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②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FY2022 예산을 각의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7조 5,964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하반기 KIPF 재정동향」을 참조(<https://www.kipf.re.kr/cfa/index.do>)

20)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

21) 연금이나 건강 보험 급여비 등 법률에 근거하는 사회 보장 자체에 드는 비용

22) 재투채(財投債), 재정 용자 자금의 운용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용자특별회계 재정용자자금 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용자 자금으로 이월됨. 발행한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용자 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동시에 상환이 재정용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 재원이 되고, 상환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름. 또한 재투채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23) 재무성,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4.html>, 검색일자: 2022. 1. 18. _____,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statement/fiscal_policy_speech/20220117.html, 검색일자: 2022. 1. 18.

- 재정부 제28조에 따른 예산서류는 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며, 208회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

[기타]

■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2022. 1. 18.)²⁴⁾

-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앞으로의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함
- 전년과 마찬가지로 ① 신종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 특별 프로그램, ② 국채 매입, ③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위해 ETF²⁵⁾ 및 J-REIT²⁶⁾ 자산매입을 시행함
- 2022년 3월 예정인 다음 금융정책 결정회의까지 현행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함
 - 단기금리: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 잔액에 -0.1%의 마이너스 금리²⁷⁾ 적용
 -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도록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
- ETF 및 J-REIT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 사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말까지 20조엔을 상한으로 매입함

- “대출 증대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대출 실행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금리를 결정하는 양적·질적 금융 완화를 유지하기로 함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 1. 18.)²⁸⁾

- (경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소비 하방 압력과 공급 제약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금융 완화, 정부 경제정책 효과로 경제 회복 전망
 - (GDP) 2021년 실질 GDP를 2.7~2.9%, 2022년 3.3~4.1%, 2023년 1.0~1.4% 전망(<표 4> 참조)
- (물가)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거시적 공급 제약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의 점진적인 가격 전가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0.0~0.1%, 2022년 1.0~1.2%, 2023년 1.0~1.3%로 전망
-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등 감염 동향이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의해야 하며, 공급 제약으로 인한 해외 상황과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음
 - 경제 전망은 코로나 감염 영향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 그 후에는 상하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

24) 일본은행,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2/k220118a.pdf, 검색일자: 2022. 1. 18.

25) ETF(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회계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6) 부동산투자신탁(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입 등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투자 신탁)으로 일본은 2001년 9월 제1호 J-REIT를 상장함(일본은행, 「J-REIT市場の拡大と価格形成」, https://www.boj.or.jp/research/wps_rev/rev_2005/data/rev05j12.pdf, 검색일자: 2022. 1. 19.)

27)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은 기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함(한경, 「경제용어사전」)

28)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 1月)」, 2022. 1. 18.,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01a.pdf>, 검색일자: 2022. 1. 18.



<표 4> 일본 2021~2023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¹⁾	소비자물가지수 ¹⁾ (신선식품제외)
2021년	+2.7~+2.9(+2.8)	0.0~+0.1(0.0)
10월 시점 전망	+3.0~+3.6(+3.4)	0.0~+0.2(0.0)
2022년	+3.3~+4.1(+3.8)	+1.0~+1.2(+1.1)
10월 시점 전망	+2.7~+3.0(+2.9)	+0.8~+1.0(+0.9)
2023년	+1.0~+1.4(+1.1)	+1.0~+1.3(+1.1)
10월 시점 전망	+1.2~+1.4(+1.3)	+0.9~+1.2(+1.0)

주: 1.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 1)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 2)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 3) 2021년 봄에 실시된 대형 통신사의 통신료 인하로 2021년 소비자물가는 약 -1.1%p 영향을 받음

출처: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2年 1月)』, 2022. 1. 18., p. 9

로 전망되고, 물가는 대체로 상·하방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독일

[기타]

■ 연방정부, Überbrückungshilfe IV 코로나 지원금 지원(2022. 1. 7.)²⁹⁾

- 연방정부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하인 기업,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계속 지원
 - 다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 및 폐쇄(closure) 등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매출이 최소 30% 이상 감소한 모든 기업은 신청 가능
 - 특히, 여행 산업 또는 문화 및 이벤트 산업과 같이 연말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초 신청 시 매일 최대 10만유로까지 선지급할 예정

■ 연방통계청, 2021년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2. 1. 14.)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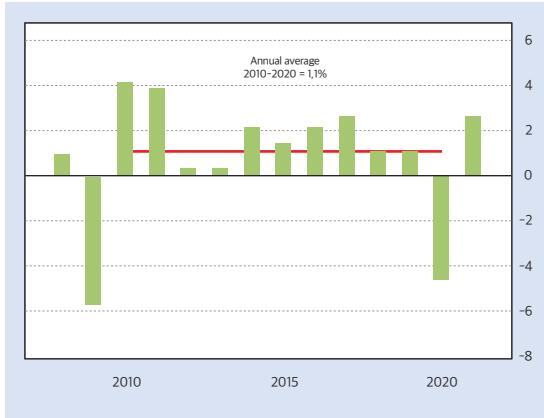
- 독일의 2021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2], <표 5> 참조)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실적이 급감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증가
 - 제조업은 전년 대비 4.4%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5.4%로 주목할 만한 증가가 나타남

29) 연방 경제기후부·연방 재무부 공동, "Überbrückungshilfe IV kann ab heute beantragt werden," 2022. 1. 7., <https://www.bmwf.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1/20220107-ueberbrueckungshilfe-iv-kann-ab-heute-beantragt-werden.html>, 검색일자: 2022. 1. 17.

30) 연방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up 2.7% in 2021," 2022. 1. 14., https://www.destatis.de/EN/Press/2022/01/PE22_020_811.html, 검색일자: 2022. 1. 17.

[그림 2] 독일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가격조정)



출처: 연방통계청, 2022. 1. 14.

-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무역, 교통,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경제성장률은 3.0%로 다소 낮았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건설업만이 소폭 하락함(-0.4%)

-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020년보다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음
 -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3.4%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독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함
- 건설업 분야의 총고정자본형성은 5년 연속 증가한 후,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2021년 0.5% 성장에 그쳤고, 기계·장비 분야는 2021년 3.2% 증가했지만 사실상 2020년에 급감한 수치의 회복 수준임

<표 5> 독일 GDP 성장률(2018~2021년, 가격조정)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가계최종소비지출	1.4	1.6	-5.9	0.0
정부최종소비지출	1.0	3.0	3.5	3.4
총고정자본형성	3.4	1.8	-2.2	1.3
건설	2.6	1.1	2.5	0.5
기계장비	4.4	1.0	-11.2	3.2
기타	3.8	5.5	1.0	0.7
수출	2.3	1.1	-9.3	9.4
수입	3.9	2.9	-8.6	8.6
총부가가치	1.1	1.0	-4.9	2.9
제조업	1.2	-1.7	-10.0	4.4
건설	1.9	0.4	3.8	-0.4
무역,교통,숙박 및 음식점업	1.5	3.3	-5.2	3.0
정보, 통신	7.5	3.8	-1.0	3.3
비즈니스 서비스	3.2	0.1	-7.4	5.4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0.6	1.8	-3.2	3.2
기타 서비스	1.6	1.9	-10.5	0.6
GDP	1.1	1.1	-4.6	2.7

출처: 연방통계청, 2022. 1. 14.

- 2021년 대외 무역은 전년도 급감에서 회복하여 수출 9.4%, 수입 8.6%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9년 수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임
-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 말 1,539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 이는 2020년 1,452억유로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로, 독일 통일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



프랑스

[예산·결산 등]

- 2022년 예산법(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³¹⁾(2021. 12. 30.)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³²⁾(2021. 12. 23.) 최종 승인 및 공포
 - 2021년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

법인³³⁾에 대해 의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³⁴⁾(2021. 12. 15.)하고, 프랑스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2022년 예산법으로 제정됨(2021. 12. 28.)

- 2022년 예산법 상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은 예산법안 전망치인 -4.9%보다 0.1%p 낮아진 -5.0%로 전망됨

- 2021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³⁵⁾을 의회에서 확정하고(2021. 12. 16.)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으로 제정됨^{36), 37)}

<표 6> 프랑스 2022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실적)	2021 (실적 전망)	2022 (기존 예산 법안 전망)	2022 (예산법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Solde structurel (1))	-1.3	-5.7	-4.8	-4.0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2)) ¹⁾	-5.0	-2.3	0.1	-0.8
특별조치(Mesures exceptionnelles (3)) ²⁾	-2.8	-0.1	-0.2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 (1) + (2) + (3))	-9.1	-8.2	-4.9	-5.0

주: 1) 경기변동으로 인한 GDP 조정분

2) 단기적으로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출처: 2022년 프랑스 예산법(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31)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1)," 2021. 12. 30.,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4637640> 검색일자: 2022. 1. 17.

32)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1)," 2021. 12. 23.,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4553428?init=true&page=1&query=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2&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2. 1. 17.

33)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2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편 참고

34) 프랑스 예산국,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du PLF 2022 par l'Assemblée nationale," 2021. 12. 15.,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112> 검색일자: 2022. 1. 17.

35)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2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편 참고

36) 프랑스 의회,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plfss_pour_2022 검색일자: 2022. 1. 17.

37)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Loi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 12. 23., <https://www.vie-publique.fr/loi/281799-loi-de-financement-la-securite-sociale-2022-plfss-budget-secu> 검색일자: 2022. 1. 17.

- 계속되는 보건의료 및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22년 사회보장예산은 204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335억유로 대비 131억유로 감소한 수치임(2020년 재정적자 387억유로)

[기타]

■ 백신패스 전환법안 제출 결정(2021. 12. 27.)³⁸⁾

- 2021년 12월 27일 특별 각료회의에서 기존 보건패스를 백신패스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1월 16일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 채택됨³⁹⁾
- 법안은 16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항원 검사가 음성이어도 식당, 카페, 대형 쇼핑몰 등의 출입이 불가함
- 이와 더불어 가짜 백신패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 허위패스 사용 시 사용자 및 대여자뿐만 아니라 백신패스 미확인자에게도 1천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여행사 보증기금 운용 시행령 발표(2021. 12. 30.)⁴⁰⁾

-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를 위한 보증기금 운용을 시행한다고 밝힘
- 관광산업은 프랑스 경제의 주요 전략분야 중 하나로 여행사 보증기금은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를 위한 재정 보증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짐
- 여행사의 보증기관은 중앙재보험기금(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을 통해 최대 15억유로의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금을 통해 관광법률 조항 L211-18 II-1°(1° du II de l'article L. 211-18 du code du tourisme)에 따라 이루어진 각종 혜택, 운송, 서비스 등 재정적 보장에 대해서 중앙재보험기금을 통해 재보험 보장을 제공함
 -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자인 기관도 보험료와 기여금의 75%를 공동기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일부(35%)는 관리비로 반환됨
- 보증기금과 기관과의 계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최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염보라 연구원>

38) 프랑스 정부포털, "« Pass sanitaire » et dose de rappel: ce qui change au 15 janvier," 2022. 1. 14., <https://www.gouvernement.fr/pass-sanitaire-et-dose-de-rappel-ce-qui-change-au-15-janvier> 검색일자: 2022. 1. 18.

39)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Projet de loi renforçant les outil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2022. 1. 14., <https://www.vie-publique.fr/loi/283068-projet-de-loi-pass-vaccinal-gestion-de-la-crise-sanitaire> 검색일자: 2022. 1. 19.

40)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n° 2021-1912 du 30 décembre 2021 portant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rticle 163 de la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en vue de définir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u fonds de garantie des opérateurs de voyages et de séjours," 2021. 12. 30.,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4791541> 검색일자: 2022. 1. 19.



영국

■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조금(Omicron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 지원(2022. 1. 7.)⁴¹⁾

- (개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잉글랜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7억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
 - 동 보조금은 영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추가 지원 계획(약 10억 파운드)의 일환임
 - 정부가 1월 7일에 지방 당국(council)에 자금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은 지원금 신청·수급이 가능함
- (지원 대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주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잉글랜드 내 접객, 레저, 숙박 부문 기업
- (지원 금액) 사업장당 최대 6천파운드의 보조금을 1회 지급
 - * 기업의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쇄 시 접객 부문 기업에 제공했던 현금 보조금(2021년 초 시행)과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

- 부동산 과세 표준 가액(2021년 12월 30일 기준)이 1만 5천파운드 이하 기업에 2,667파운드, 1만 5천~5만 1천파운드인 기업에 4천파운드, 5만 1천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6천파운드 지급

- (지원 일정)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 2022년 3월 31일까지 지급
- (기타) 접객, 레저 부문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는 기타 사업체도 정부가 지역 당국에 1억파운드 이상 배정한 ‘코로나19 제한 조치 관련 보조금(Additional Restrictions Grant)’을 신청할 수 있음

■ 생활비 상승에 직면한 가계 지원을 위해 2년간 TV 수신료 동결 예정(2022. 1. 17.)⁴²⁾

- (목적) 정부는 재정 압력을 받고 있는 가계를 보호하고, 방송사에게 명확한 자금 흐름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6년(2022. 4. 1.-2028. 3. 31.) 동안의 TV 수신료 배정 계획을 발표함
- (주요 내용) TV 수신료는 2024년까지 연 159파운드로 유지되며, 이후 4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될 예정
 - BBC는 2022년에 약 37억파운드, 6년간 약 230억 파운드의 수신료 자금을 받을 예정

41) HM Treasury 외, "Businesses most impacted by Omicron variant to benefit from over £700 million as government delivers funding to local authorities," Press release, 2022. 1.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sinesses-most-impacted-by-omicron-variant-to-benefit-from-over-700-million-as-government-delivers-funding-to-local-authorities>, 검색일자: 2022. 1. 13.,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Omicron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 -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2022. 1. 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6032/omicron-hospitality-and-leisure-grant-guidance-rev.pdf, 검색일자: 2022. 1. 13.

42)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TV licence fee frozen for two years," Press release, 2022. 1. 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tv-licence-fee-frozen-for-two-years>, 검색일자: 2022. 1. 18.

- 또한 정부는 BBC World Service 지원을 위해 BBC에 연간 9천만파운드 이상 제공
- 웨일스어 방송 채널인 S4C에 대한 계획도 이와 유사하며 디지털 개발을 위해 연간 750만파운드를 추가 할당
- 정부는 이러한 수신료 계획이 BBC 개혁을 위한 정부 로드맵의 한 단계이며, 올해 말에 BBC의 거버넌스, 규제, 개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재정포럼

2022년 2월호 통권 제308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2년 2월 15일 발행 / 제26권 제2호(통권 제30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6.

- 01 아르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